특 허 법 원

제 5 - 2 부

판 결

사 건 2023허10095 등록무효(특)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지배인 C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정학

피 고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루제일(담당변호사 박창수)

특허법인 그루(담당변리사 이형일, 김찬미)

변 론 종 결 2023. 6. 8.

판 결 선 고 2023. 8. 17.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22. 12. 13. 2022당161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제1505809

호의 청구범위 제3항 내지 제8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22. 12. 13. 2022당161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 1) 발명의 명칭: 데이터망 및 공중망을 이용한 동보메시지 전송방법
-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3. 10. 25./ 2015. 3. 19./ 특허 제1505809호
- 3) 청구범위

【청구항 1】데이터망 및 공중망을 이용한 동보메시지 전송방법에 있어서, 동보메시지 전송서버가 발신단말기로부터 전송되어야 할 동보메시지의 전송요청을 수신하는 제 11단계(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한다); 상기 동보메시지 전송서버가 상기 동보메시지를 전송할 착신단말기의 전화번호와 상기 동보메시지의 수신을 위한 앱이 설치된 착신단말기의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비교하는 제12단계(이하 '구성요소 1-2'라 한다); 상기 동보메시지를 전송할 착신단말기의 전화번호가 상기 앱이 설치된 착신 전화번호에 해당되면 상기 동보메시지 전송서버가 데이터망을 통하여 상기 착신단말기로 상기 동보메시지를 전송하는 제13단계(이하 '구성요소 1-3'이라 한다); 상기 동보메시

지 전송서버가 상기 착신단말기의 앱으로부터 동보메시지 수신완료 메시지를 상기 착 신단말기에게 상기 동보메시지를 전송한 후 미리 설정된 시간동안 피드백받는 제14단 계(이하 '구성요소 1-4'라 한다); 상기 착신단말기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동보메시지 수 신완료 메시지를 상기 동보메시지 전송서버가 수신한 경우 상기 동보메시지가 상기 착 신단말기에 정상적으로 수신되었음을 확인하는 제15단계(이하 '구성요소 1-5'라 한다); 및 상기 착신단말기의 상기 앱에 동보메시지가 표시되는 16단계(이하 '구성요소 1-6'이 라 한다)로 구성되며, 상기 제12단계에서 앱이 설치된 착신번호가 아닌 착신단말기인 경우 또는 상기 제14단계에서 상기 동보메시지 전송서버가 상기 착신단말기의 앱으로 부터 동보메시지 수신완료 메시지를 피드백받지 못하는 경우 상기 동보메시지 전송서 버가 공중망을 통하여 상기 동보메시지를 전송하는 제21단계(이하 '구성요소 1-7'이라 한다); 및 상기 동보메시지 전송서버가 상기 공중망으로 전송한 상기 동보메시지를 상 기 착신단말기에 표시되는 제22단계(이하 '구성요소 1-8'이라 한다)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망 및 공중망을 이용한 동보메시지 전송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르며,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특허 발명'이라 한다).1)

【청구항 2】삭제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1단계이후 상기 착신단말기에 설치된 상기 앱에서 상기 동보메시지 전송서버가 상기 데이터망으로 전송한 상기 동보메시지가 상기 착신단말기에 수신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211단계(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를

¹⁾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 2016. 11. 28.자 2016당818호 심결에 의해 무효가 되었다(위 심결은 특허법원 2017. 5. 25. 선고 2016허9790 판결, 대법원 2017. 10. 12.자 2017후1465 판결에 의해 확정되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나머지 청구항(제3 내지 11항)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모두 기재하였다(을 제3 내지 5호증).

추가로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망 및 공중망을 이용한 동보메시지 전송방 법.

【청구항 4】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211단계에서 상기 데이터망으로 전송된 상기 동보메시지가 상기 착신단말기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 상기 공중망으로 전송된 상기 동보메시지가 상기 착신단말기에 표시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망 및 공중망을 이용한 동보메시지 전송방법.

【청구항 5】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211단계에서 상기 데이터망으로 동보메시지가 착신단말기에 수신된 경우, 상기 착신단말기에 상기 데이터망 및 상기 공중망으로 상기 동보메시지가 이중으로 수신함에 따른 이중수신 동작을 수행하는 제212단계(이하'구성요소 5-1'이라 한다)를 구비하고, 상기 제212단계 이후 상기 착신단말기에 공중망으로 전송된 동보메시지가 표시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5-2'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데이터망 및 공중망을 이용한 동보메시지 전송방법.

【청구항 6】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212단계의 이중수신 동작은 상기 동보메시지가 상기 데이터망 및 상기 공중망을 이용하여 이중으로 수신되었음을 상기 착신단말기의 상기 앱에 표시하는 동작, 상기 착신단말기의 앱에 수신된 동보메시지를 비활성화하는 동작 또는 상기 착신단말기의 앱에 수신된 동보메시지를 삭제하는 동작 중 어느 하나이상인 것(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망 및 공중망을 이용한 동보메시지 전송방법.

【청구항 7】 제5항 또는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착신단말기에 설치된 상기 앱에서 상기 데이터망 및 상기 공중망으로 동보메시지가 상기 착신단말기에 이중 수신되었는지의 판단은 동보메시지 발신자, 동보메시지 발신시각 또는 동보메시지 내용 중 어느 하

나 이상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 망 및 공중망을 이용한 동보메시지 전송방법.

【청구항 8】제7항에 있어서, 상기 동보메시지 발신시각에 의한 비교는 공중망으로 동보메시지를 전송한 발신시각과 데이터망으로 발신한 시각에 미리 설정된 수신완료 피드백 시간을 합한 시각을 비교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8'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데이터망 및 공중망을 이용한 동보메시지 전송방법.

【청구항 9】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2단계와 상기 제13단계 사이에 상기 착신단말기에 동보메시지 미확인 설정모드가 있는지 판단하는 제31단계(이하 '구성요소 9'라 한다)를 추가로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망 및 공중망을 이용한 동보메시지 전송방법.

【청구항 10】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31단계에서 상기 착신단말기에 상기 미확인 설정모드가 없는 경우 상기 제13단계를 수행(이하 '구성요소 10-1'이라 한다)하며, 상기 착신단말기에 상기 미확인 설정모드가 있는 경우 상기 동보메시지의 메시지 전송 보류, 상기 동보메시지의 일부 내용을 전송하여 표시 또는 상기 동보메시지를 전송하지만 상기 착신단말기의 상기 앱에서 표시 보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미확인 모드로 동작하는 제32단계를 추가로 구비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10-2'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데이터망 및 공중망을 이용한 동보메시지 전송방법.

【청구항 11】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32단계 이후 상기 착신단말기로부터 동보메시지 확인 요청이 있는 지를 판단하고(이하 '구성요소 11-1'이라 한다), 상기 동보메시지확인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기 제32단계의 상기 미확인 모드로 동작을 지속하며(이하 '구성요소 11-2'라 한다), 상기 착신단말기로부터 상기 동보메시지 확인 요청이 있

는 경우 동보메시지 전송 보류인 경우에는 메시지를 상기 동보메시지 전송서버로부터 다운로드, 동보메시지 일부 내용 전송인 경우에는 잔여 메시지 또는 전체 내용을 상기 동보메시지 전송서버로부터 다운로드 또는 상기 착신단말기의 앱에서 표시 보류인 경우에는 앱에서의 착신 표시를 활성화하는 제33단계(이하 '구성요소 11-3'이라 한다) 및 상기 착신단말기의 앱에서 동보메시지가 표시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11-4'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데이터망 및 공중망을 이용한 동보메시지 전송방법.

4) 발명의 주요 내용 및 도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중 수신 처리 및 미확인 설정 모드를 구비한 데이터망 및 공중망을 이용한 동보메시지 전송방법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1과 같다.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을 제6호증)

2013. 2. 27. 공개된 공개특허공보(제10-2013-0020508호)에 게재된 '대량메시지 전송 시스템'이라는 명칭의 발명으로, 그 주요내용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2) 선행발명 2(을 제7호증)

2012. 12. 3. 공고된 등록특허공보(제10-1207694호)에 게재된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및 장치'라는 명칭의 발명으로, 그 주요내용 및 도면은 별지 3과 같다.

3) 선행발명 3(을 제8호증)

2006. 6. 19. 공고된 등록특허공보(제10-0593474호)에 게재된 '이동통신망에서의 메시지 중복 전송 방법 및 그를 이용한 단말기에서의 중복 메시지 처리 방법'이라

는 명칭의 발명으로, 그 주요내용 및 도면은 별지 4와 같다.

4) 선행발명 4(을 제9호증)

2013. 9. 5. 공개된 미국 공개특허공보(제2013/0231088호)에 게재된 '무선통신장치를 사용한 사회적 프로파일링을 위한 시스템과 방법'이라는 명칭의 발명으로, 그 주요내용 및 도면은 별지 5와 같다.

5) 선행발명 5(을 제10호증)

2005. 8. 10. 공개된 공개특허공보(제2005-0079515호)에 게재된 '이동 통신 단말기의 EMS 중복 메시지 확인 방법'이라는 명칭의 발명으로, 그 주요내용 및 도면은 별지 6과 같다.

6) 선행발명 6(을 제11호증)

2006. 2. 1. 공고된 등록특허공보(제10-0547957호)에 게재된 'SMS 수신 일시보류 서비스 방법'이라는 명칭의 발명으로, 그 주요내용 및 도면은 별지 7과 같다.

7) 선행발명 7(을 제12호증)

2008. 10. 23. 공고된 등록특허공보(제10-0865118호)에 게재된 '메시지 부분 수신 방법 및 그에 따른 휴대용 단말기'라는 명칭의 발명으로, 그 주요내용 및 도면은 별 지 8과 같다.

8) 선행발명 8(을 제13호증)

2013. 1. 29. 공개된 공개특허공보(제10-2013-0010700호)에 게재된 '휴대용 이동통신 단말기 관리 방법 및 상기 관리 방법이 수행되는 휴대용 이동통신 단말기'라는 명칭의 발명으로, 그 주요내용 및 도면은 별지 9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1) 피고는 2022. 6. 10.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제3항 내지 제11항 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2)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2022당1616호로 심리한 다음, 2022. 12. 13. '이 사건 제3항 및 제4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이 사건 제5항 내지 제7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 3에 의하여, 이 사건 제8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 3 또는 선행발명 1, 2, 3, 4에 의하여, 이 사건 제9항 내지 제11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 6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 이 사건 제3항 내지 제11항 발명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 1)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는 항으로 사용자 단말이 '메시지 수신 성공'을 피드백하기 위한 것이나, 선행발명 1, 2는 메시징 처리서버 또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메시지 전송 성공'을 피드백하는 것으로 피드백 주체와 내용이 상이하고,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통신사업자에게 종속되지 않으나, 선행발명 1은

통신사업자에게 가입하여야만 메시지 전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선행발명 1, 2 또는 선행발명 1, 2, 3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다.

- 2)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을 인용하는 항으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므로 선행발명 1, 2 또는 선행발명 1, 2, 3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다.
- 3) 이 사건 제5항 및 제6항 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을 인용하는 항으로 데이터망과 공중망으로 전송된 메시지의 이중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이중수신에 따른 중복 표시를 방지하는 이중수신 동작을 더 부가한 것이나, 선행발명 3은 서로 다른 종류의 이동통신망을 통해 전송된 메시지의 중복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선행발명 1, 2, 3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다.
- 4) 이 사건 제7항 및 제8항 발명은 이 사건 제5항 발명을 직간접으로 인용하는 항으로 메시지의 발신자, 발신시각, 내용 중 어느 하나 이상을 비교하여 데이터망으로 전송된 메시지와 공중망을 통해 전송된 메시지의 이중수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선행발명 3은 단문서비스(SMS)에서 서비스범위 번호(SCN)와 메시지 식별번호(MID) 값의수신 이력을 비교하여 단문서비스 내의 중복 수신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선행발명 4는 동일한 무선네트워크에서 메시지의 타임스탬프를 비교하여 메시지의 중복 수신여부를 판단하며, 선행발명 5는 이동통신단말기의 EMS 메시지 내에서 메시지의 세그먼트를 비교하여 중복 수신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데이터망과 공중망을 통해 전송된 메시지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는 이 사건 제7항 및 제8항 발명과 상이한 구성이어서 선행발명 1, 2, 3 또는 선행발명 1, 2, 3, 4 또는 선행발명 1, 2, 3, 5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다.

- 5) 이 사건 제9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는 항으로 착신 단말기의 앱이 착신 단말기에 동보메시지 미확인 설정모드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나, 선행발명 6은 동작주체가 서버이고 SMS 수신 일시보류 기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제9항 발명과 같이 동작주체가 착신 단말기에 설치된 앱이 아니며, 데이터망과 공중망을 모두 이용하지 않으므로 선행발명 1, 2, 6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다.
- 6) 이 사건 제10항 및 제11항 발명은 이 사건 제9항 발명을 직간접으로 인용하는 항으로 착신 단말기에서 미확인 설정모드가 있는 경우 메시지 전송을 보류하는 등 미확인 모드로 동작하고 사용자의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보류된 메시지를 표시하는 것이나, 선행발명 6은 SMS 수신 일시보류를 설정하면 SMS 서버가 SMS 메시지를 보관하였다가 일시보류가 해제되면 보관된 SMS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하는 것이고, 선행발명 7은 메시지를 부분 송신하여 표시하는 것이며, 선행발명 8은 메시지를 전송하지만 착신단말기에서 표시를 보류하는 것으로, 데이터망과 공중망을 모두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송하는 이 사건 제10항 및 제11항 발명과 상이한 구성이어서 선행발명 1, 2, 6 또는 선행발명 1, 2, 7 또는 선행발명 1, 2, 8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다.

나. 피고

- 이 사건 제3항 내지 제11항 발명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1)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착신단말기의 앱에서 데이터망으로 전송된 메시지의 수신 여부를 확인하는 동작이고, 선행발명 1, 2의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또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에서 메시지의 수신을 확인하는 동작과 동일하다. 설령, 이 사건 제3항 발명이 "제21단계이후"에 수행되는 점에서 '이중수신 확인'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선

행발명 3에서 '제1메시지'의 송신 후 '제2메시지'의 중복 수신을 확인하는 구성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선행발명 1, 2 또는 선행발명 1, 2, 3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

- 2)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 데이터망으로 전송된 동보메시지가 착신단말기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 공중망으로 전송된 동보메시 지가 착신단말기에 표시되는 것이나, 선행발명 2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통하 여 메시지의 전송이 실패하는 경우에 이를 문자 메시지 서버를 이용하여 전송하고, 이 를 착신단말기에 표시하는 구성'으로부터 쉽게 도출되므로,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선 행발명 1, 2 또는 선행발명 1, 2, 3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
- 3)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동보메시지가 데이터망으로 착신단말기에 이중으로 수신된 경우 이중수신 동작을 수행하고, 공중망으로 전송된 동보메시지가 착신 단말기에 표시되는 것이나, 선행발명 3의 '제2 메시지가 수신된 경우, 먼저 수신한 제1 메시지와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된 메시지의 경우에는 제2 메시지를 무시하여 제1 메시지를 표시하는 구성'으로부터 쉽게 도출되고, 재전송에 따른 중복 표시 방지 기능은 네트워크분야에 널리 알려진 기술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이를 해결하는 방법도 주지관용기술이어서 선행발명 3을 선행발명 1, 2에 결합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 3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
- 4)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이 사건 제5항 발명을 인용하는 항으로 '이중수신 동작'이 '동보메시지가 데이터망 및 공중망을 이용하여 이중으로 수신되었음을 착신단말기의 앱에 표시하는 동작, 착신단말기의 앱에 수신된 동보메시지를 비활성화하는 동작 또는 착신단말기의 앱에 수신된 동보메시지를 삭제하는 동작 중 어느 하나 이상인 것'이나.

선행발명 3의 '제2 메시지가 수신된 경우, 먼저 수신한 제1 메시지와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된 메시지의 경우에는 제2 메시지를 무시하는 구성'으로부터 쉽게 도출되므로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 3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

- 5)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메시지의 발신자, 발신시각, 내용 중 어느 하나 이상을 비교하여 데이터망으로 전송된 메시지와 공중망을 통해 전송된 메시지의 이중수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이는 선행발명 3의 중복 수신 메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서비스범위 번호(SCN)'가 해당 방송 메시지를 전송하는 채널에 해당하여 발신자에 대응되고, 선행발명 4의 중복메시지를 식별하기 위한 메시지 헤더와 메시지 타임스탬프 데이터에 대응되며, 선행발명 5의 중복메시지를 판단하기 위한 EMS 메시지의 모든 세그먼트를 비교하는 구성에 대응되는 것으로 선행발명 1, 2, 3 또는 선행발명 1, 2, 3, 4 또는 선행발명 1, 2, 3, 5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
- 6) 이 사건 제8항 발명은 이 사건 제7항 발명을 인용하는 항으로 발신시각에 의한 비교는 공중망으로 동보메시지를 전송한 발신시각과 데이터망으로 발신한 시각에 미리 설정된 수신완료 피드백 시간을 합한 시각을 비교하는 것이나, 선행발명 4의 타임스탬프를 비교하여 중복 수신을 확인하는 구성으로부터 쉽게 도출되므로, 이 사건 제8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 3 또는 선행발명 1, 2, 3, 4 또는 선행발명 1, 2, 3, 5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
- 7) 이 사건 제9항 발명은 착신 단말기의 전화번호를 비교하는 제12단계와 앱이 설치된 착신 단말기이면 데이터망을 통하여 동보메시지를 전송하는 제13단계 사이에서 착신 단말기의 앱에 동보메시지 미확인 설정모드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나, 선행발명 6의 'SMS 수신의 일시보류 기능이 설정되면 SMS 서버가 SMS 메시지를 보관하는 구성'

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9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 6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

- 8) 이 사건 제10항 발명은 이 사건 제9항 발명을 인용하는 항으로 착신 단말기에서 미확인 설정모드가 있는 경우 동보메시지의 전송 보류, 일부 전송 또는 앱에서의 표시보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미확인 모드로 동작하는 것이나, 선행발명 6의 'SMS 수신일시보류를 설정하면 SMS 서버가 SMS 메시지를 보관하였다가 일시보류가 해제되면보관된 SMS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하는 구성', 선행발명 7의 '메시지를 부분 송신하여표시하는 구성', 선행발명 8의 '메시지를 전송하지만 착신 단말기에서 표시를 보류하는구성'으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0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 6 또는 선행발명 1, 2, 7 또는 선행발명 1, 2, 8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
- 9) 이 사건 제11항 발명은 이 사건 제10항 발명을 인용하는 항으로 착신 단말기에서 미확인 설정모드가 있는 경우 메시지를 전송 보류하는 등의 미확인 모드로 동작하고 사용자의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보류된 메시지를 표시하는 것이나, 선행발명 6의 'SMS 수신 일시보류를 설정하면 SMS 서버가 SMS 메시지를 보관하였다가 일시보류가 해제되면 보관된 SMS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하는 구성', 선행발명 7의 '부분 수신된 메시지의 나머지 부분을 수신하는 것을 선택하면 잔여 메시지 전체를 수신하는 구성', 선행발명 8의 '블라인드 모드 실행 중에 사용자가 수신 목록 확인 메뉴를 선택하면, 블라인드 모드 실행 중에 수신된 문자 메시지를 표시하는 구성'으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1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 6 또는 선행발명 1, 2, 7 또는 선행발명 1, 2, 8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 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워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 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 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 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 21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 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 로, 그 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 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 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 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발명에 이를 수 있 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후262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말하는 '데이터망' 및 '공중망'의 의미

이 사건 특허 명세서에는 데이터망과 공중망에 대한 정의를 기재하고 있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특허 명세서의 기재로 보아 기업용 메시지 전송은 착신 단말기의 종류에 따라 데이터망 및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이 있다는 점(단락 [0004] 참조). 이동통신 망이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공중망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착신 단말기 가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인 경우 데이터망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송하다는 기재 및 앱 을 이용한 전송 요금이 무료이거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이라는 기재로부터 '스마트 폰의 메신저 앱을 통한 메시지 전송'을 '데이터망을 통한 전송'으로 보고 있다는 점(단 락 [0001], [0020] 참조), 통상적으로 동보 메시지는 문자 메시지[SMS(Short Message Service) 또는 MMS(Multimedia Message Service)]로 전송되어지므로 이동통신망(공중 망)을 이용한 전송이란 문자 메시지를 통한 전송을 의미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데이터망은 요금이 무료(예를 들어, WiFi)이거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이 드는 데이터 통신망(예를 들어, 이동통신사의 3G 데이터망, LTE 등)을 이용하여 착신단말기 에 설치된 앱(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동보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한 망이고. 공중 망은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이 드는 이동통신망 즉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문자 메시지(SMS, MMS)를 통해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한 망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특허명세서 단락 [0001], [0004], [0020]

[0001] 본 발명은 데이터망 및 공중망을 이용한 동보메시지 전송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발신단말기로부터 전송된 동보 메시지 전송요청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착신 단말기로 동보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착신단말기 전화번호가 앱(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인 경우에는 데이터망을 통하여 동보 메시지를 전송하고, 착신단말기가 앱을 통하여 동보 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모바일폰,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지 않은 스마트폰인 경우와 데이터망을 이용하여 전송된 동보메시지가 착신단말기에 수신되었는지 불명확한 경우에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공중망과 연결하여 동보메시지를 전송하여 동보메시지를 착신단말기에 비교적 낮은 전송비용으로 반드시 착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망을 이용하여 전송된 동보메시지의 이중수신에 따르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망 및 공중망을 이용한 동보메시지 전송방법에 관한 것이다.

[0004] <u>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기업용 메시지 전송 시 수신 착신 단말기의 종류에 따라 데이터망을 이용한 메시지 전송</u>, <u>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메시지 전송을 선택적으로 구현</u>함으로써, 메시지 전송에 소요되는 투입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0020] 동보메시지 전송서버가 동보메시지 전송 요청 대상 착신단말기가 동보메시지 수신을 위한 앱이 설치된 착신단말기의 전화번호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동보메시지 전송서버내에 포함되는 앱이 설치된 착신단말기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와 서로 비교(제12단계)하여, 앱이 설치된 착신번호에 해당되면 동보메시지 전송서버가 동보메시지 전송에 소요되는 요금이 무료이거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이터망을 통하여 상기 착신단말기로 동보메시지를 전송한 다(제13단계).

- 3) 이 사건 제3항 발명이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도출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제3항 발명이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도출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먼저 이 사건 제3항 발명이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특징 및 그 특징이 선행발명 1, 2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관한 선행 확정판결(특허법원 2017. 5. 25. 선고 2016허9790 판결, 을 제4호증)의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한 다음,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인 '구성요소 3'이 선행

발명들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

-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특징에 대한 검토
-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이 사건 제3항 발명이 인용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동보메시지를 데이터망을 통하여 전송하되, 착신단말기로부터 수신완료 메시지를 피드백받지 못하는 경우, 동일한 내용의 동보메시지를 공중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고 있으나, 선행발명 1의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에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송하는 시스템'에 선행발명 2의 '우선적으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메시지를 전송하되 전송이 실패한 경우 동일한 메시지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장치'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특허심판원 2016. 11. 28. 2016당818 심결, 특허법원 2017. 5. 25. 선고 2016허9790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후1465 판결 참조).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검토

원고는 ①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동보메시지 전송서버에 수신완료를 피드백하는 주체는 착신단말기'인 반면, 선행발명 2에서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라는 점, ②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착신단말기가 전송결과(수신결과)를 피드백하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2는 선행발명 2의 도면 1에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120)와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130) 사이에만 양방으로 화살표가 도시되어 있고,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130)와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단말(140) 사이에는 일방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는 것처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메시지 전송여부만을 피드백할 뿐 사용자 단말에서의 수신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③ 이 사건 특

허발명은 통신사업자에 종속되지 않아 통신사업자에게 가입하지 않더라도 메시지 전송이 가능한 반면, 선행발명 1은 사용자 단말이 통신사업자에게 가입하여야만 메시지 전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특징이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도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선행발명 2에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사용자의 단말에 설치된 메 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메시지의 전송을 시도'하고.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메시지의 전송이 성공한다면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에 통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선행발명 2의 단락 [0036] 참조), 해당 기술분야에서 '메시지의 전송이 성공한 다'는 의미는 단순히 메시지를 송신했다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동작에 불과하 고 사용자 단말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했다는 신호를 받는 경우까지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기술상식이므로. 선행발명 2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사용자 단말에 메시 지를 송신한 후 사용자 단말로부터 송신 메시지가 수신되었다는 확인 신호를 받은 후 에야 이를 전송이 성공했다고 판단할 것이고, 이런 후에야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 에 '메시지 전송이 성공'했다는 통지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선행발 명 2에 사용자 단말로부터 수신완료 피드백을 하는 과정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 더라도 이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수신완 료 피드백의 주체와 피드백 내용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기술상식을 고려하지 않은 주 장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① 이 사건 제1항 발명에는 "상기 동보메시지 전송서버가 상기 동보메시지를 전송할 착신단말기의 전화번호와 상기 동보메시지의 수 신을 위한 앱이 설치된 착신단말기의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비교하는 제12단 계"라고 기재되어, 동보메시지를 전송할 착신단말기는 전화번호가 부여된 단말기를 전

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사용자 단말이 통신사업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메시지 전송이 가능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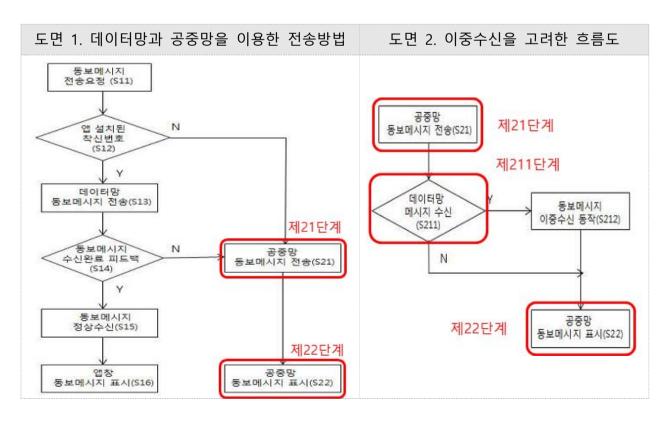
선행발명 2의 단락 [0036]

반대로, 메시지 수신자가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및 단문 메시지 두 개의 방식으로 메시지의 수신을 원한다면,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120)는 우선적으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130)로 메시지의 전송을 요청한다. 이 때,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130)는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120)로부터의 요청에 응답하여, 사용자의 단말에 설치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상기 메시지의 전송을 시도한다. 만약,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상기 메시지의 전송이 성공한다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130)는 상기 메시지의 전송이 성공했음을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120)로 알려준다. 반대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상기 메시지의 전송이 실패한다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130)는 상기 메시지의 전송이 실패했음을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120)로 알려준다.

(3) 검토결과

-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선행발명 1, 2의 기술적 특징과 관련된 원고의 추가적인 주장들도 모두 이유 없다.
- 나)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이 선행발명 1 내지 3으로부터 쉽게 도출 가능한지 여부
 - (1)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3 및 그 의미
-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1단계 이후** 상기 착신단말기에 설치된 상기 앱에서 상기 동보메시지 전송서버가 상기 데이터망으로 전송한 **상기 동보메시지**가 상기 착신단말기에 수신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21단계(구성요소 3)를 추가로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21단계는 '동보메시지 전송서버

가 착신단말기의 앱으로부터 동보메시지 수신완료 메시지를 피드백받지 못한 경우 동보메시지 전송서버가 공중망을 통하여 착신단말기로 동보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이고, 제22단계는 '공중망으로 전송된 동보메시지를 착신단말기에 표시하는 단계'이다. 즉, 이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은 제21단계와 제22단계 사이에서(도면 2 참조) 동보메시지 전송서버가 동보메시지를 공중망을 통하여 착신단말기로 전송하는 제21단계 이후에 착신단말기가 공중망으로 전송된 동보메시지를 수신한 다음 착신단말기가 착신단말기에 설치된 앱에서 공중망을 통해 전송된 동보메시지와 동일한 동보메시지를 데이터 망으로 수신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이는 착신단말기가 공중망으로 수신된 동보메시지와 데이터망으로 수신된 동보메시지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동작이며, 공중망과 데이터망을 통해 중복 수신된 동보메시지를 중복 표시하지 않기 위한 전제동작이다.



(2) 구체적 검토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 3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선행발명 1은 아래 단락의 기재와 같이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 단말에는 인터넷망(데이터망)을 통해 메시지를 전송하고, 그렇지 않은 휴대 단말에는 이동통신망(공중망)을 통해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휴대 단말을 구분하여 메시지를 전송할 뿐 인터넷망(데이터망)과 이동통신망(공중망)을 통해 이중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고 있으므로, 메시지의 이중전송으로 인한 중복표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행발명 1에는 인터넷망(데이터망)과 이동통신망(공중망)을 통해 이중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메시지가 중복 표시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선행발명 1의 단락 [0027], [0032]

[0027] <u>메시징 처리 서버(120)는</u>, 발송대상 문자메시지의 수신이동 디렉토리 번호(mobile directory number, 이하 MDN)를 메시징 에이전트(140)로부터 전송받고, 전송받은 수신 MDN을 미리 저장되어 있는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200)이 설치된 휴대 단말의 MDN 집합과 비교하여, 그 비교 결과 값을 메시징 에이전트(140)로 전송하고, <u>메시지 발송 서버(300)로부터 전송받은 문자메시지를 특정메시지 포맷으로 변환한 메시지를 발송대상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200)으로 전송한다.</u>

[0032] 메시징 에이전트(140)는, 상기 비교 결과 값을 메시징 처리서버(120)로부터 전송받고, 상기 비교 결과 값에 따라,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200)이 설치된 휴대 단말의 MDN 집합 에 속하는 수신 MDN의 해당 발송대상 문자메시지는 메시징 발송 서버(300)가 메시징 처리 서버(120)로 전송하도록 하고, 상기 MDN 집합에 속하지 않는 수신 MDN의 해당 발송대상 문자메시지는 메시징 발송 서버(300)가 이동통신망을 통해 해당 휴대 단말에 전송하도록 한다.

(나) 선행발명 2는 아래 단락의 기재와 같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메신저 어

플리케이션(데이터망)을 통해 우선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는데, 메시지 전송에 실패한 경우 문자 메시지 서버(공중망)를 통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이므로, 정상적이라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데이터망)을 통해 메시지를 전송하는데 실패한 경우에만 문자메시지 서버(공중망)를 통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게 되고, 역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망)과 문자 메시지 서버(공중망)를 통한 이중전송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다만, 비정상적으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데이터망)을 통해 메시지를 전송하는데 성공하였더라도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메시지 전송에 실패한 경우로 판단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가 상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리 설정한 시간을 경과하여메시지 전송 성공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경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메신저 어플리케이션(데이터망)을 통한 메시지 전송에 실패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발명 2는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예상하여 착신단말기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과 문자 메시지에서 동일한 메시지가 중복해서 표시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인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당연히 이러한 이중 수신에 따른 중복 표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위한 구성도 전혀 개시하고 있지 않다.

선행발명 2의 단락 [0036] ~ [0038]

[0036] 반대로, 메시지 수신자가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및 단문 메시지 두 개의 방식으로 메시지의 수신을 원한다면,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120)는 우선적으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130)로 메시지의 전송을 요청한다. 이 때,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130)는 기업형 메시지서비스 서버(120)로부터의 요청에 응답하여, 사용자의 단말에 설치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상기 메시지의 전송을 시도한다. 만약,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상기 메시지의 전송이 성공한다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130)는 상기 메시지의 전송이 성공했음을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120)로 알려준다. 반대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상기 메시지의 전송이 실패한다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130)는 상기 메시지의 전송이 실패했음을 기업

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120)로 알려준다.

[0037] 또한, <u>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130)가 메시지를 전송하는 데에 실패한 경우, 기업형</u> 메시지 서비스 서버(120)는 문자 메시지 서버(150)로 상기 메시지의 전송을 요청한다. 이 때, 문자 메시지 서버(150)의 처리 결과는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120)로 회신된다.

(다) 선행발명 3은 아래 기재와 같이 단문서비스(SMS, 공중망)에서 재전송된 메시지가 중복 표시되지 않도록 이동통신단말기에서 서비스범위 번호(SCN)와 메시지 식별번호(MID)의 이력을 저장하였다가 수신된 SMS 메시지의 서비스범위 번호(SCN)와 메시지식별번호(MID)를 이전 이력과 비교하여 중복 여부를 판단한 후 중복된 SMS 메시지라면 이를 무시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발명 3의 구성을 선행발명 1, 2와 결합하더라도 SMS(공중망)를 통한 SMS 메시지의 중복 수신 여부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사후적 고찰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데이터망과 공중망을 통해 이중으로 전송된 메시지의 중복 표시 여부를 해결하기 위한 구성을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동일한 망에서는 수신된 메시지들은 메시지 포맷이 동일하여 서로 비교하기 쉽지만 서로 다른 망에서 수신된 메시지들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 데이터 및 비교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 서로 상이한 메시지 포맷에서 비교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 등이수반되어야 하므로 이를 쉽게 설계 변경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선행발명 3의 3면 1단락, 8면 5단락

본 발명은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방송형 정보 서비스나 단문서비스(SMS : Short Message Service) 재전송시 발생되는 메시지 중복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메모리 사용 효율을 높이며, 고객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단말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이동통신망에서의 메시지 중복 전송 방법 및 그를 이용한 단말기에서의 중복 메시지 처리 방법과,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관한 것이다(3면 1단락).

메시지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말기내의 이력 버퍼(History Buffer)가 기존에 수신한 메시지들의 이력(History)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이력을 바탕으로 메시지 중복 수신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서, 이러한 이력을 기억하는 수단으로 서비스범위와 메시지 식별번호 필드가 사용된다(8면 5단락).

- (라) 선행발명 1, 2에는 동일한 메시지를 데이터망과 공중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고, 선행발명 3에는 SMS(공중망)에서의 메시지 중복 표시를 방지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을 뿐, 데이터망과 공중망을 통해 이중으로 수신된 메시지의 중복 표시 방지를 위한 동기나 구성을 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행발명 1 내지 3을 결합하더라도 이 사건 제3항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검토
 - (1) 구성요소 3의 해석과 관련한 피고 주장에 대한 검토

피고는,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은 착신단말기의 앱에서 데이터망으로 전송된 메시지의 수신 여부를 확인하는 동작이어서 선행발명 1, 2의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또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에서 메시지의 수신을 확인하는 동작과 다르지 않고,원고도 소외 사건(2021가합585191)에서 구성요소 3을 'D톡 알림 숫자(배지) 표시'에 대응시켜 착신단말기의 앱에서 데이터망으로 전송된 메시지의 수신을 확인하는 단순한동작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진보성이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의하여 부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은, 동보메시지 전송서버가 착신단말기의 앱으로부터 동보메시지 수신완료 메시지를 피드백받지 못한 경우 동보메시지 전송서버 가 공중망을 통하여 착신단말기로 동보메시지를 전송하는 제21단계 이후, 공중망으로 전송한 동보메시지를 착신단말기에 표시하는 제22단계 이전에 처리되는 동작으로 공중 망을 통해 수신된 메시지와 데이터망을 통해 수신된 메시지의 동일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어서 선행발명 1, 2의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또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에서 단순히 메시지의 수신을 확인하는 동작과 상이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이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3만을 분리해서 해석한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소외 사건은 특허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민사 사건으로 특허와 침해 여부를 다투는 제품 간의 대비이고, 원고가 소외 사건에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 요소 3을 D톡의 알림 숫자에 대응된다고 주장하였다고 해서, 이 법원이 구성요소 3을 해석함에 있어 소외 사건에서의 원고 주장에 기속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구성요소 3의 용이 도출 관련 피고 주장에 대한 검토
- (가) 피고는,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이 이중수신 확인을 위해 전제가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선행발명 3에 아래와 같이 '제1 메시지의 수신 후에 제2 메시지가 수신되면, 제2 메시지의 중복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제2 메시지를 무시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행발명 1, 2와의 결합이 용이하므로 구성요소 3을쉽게 도출할 수 있어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진보성이 선행발명 1 내지 3의 결합에 의하여 부정된다고 주장한다.
- ① 재전송에 따른 중복방지 기능은 네트워크 기술분야에서 기술적 과제 및 그 해결수단이 잘 알려진 주지관용기술이다(을 제14, 15호증 참고).

을 제14호증 15면

재전송 및 중복 확인

어떤 전송도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TCP가 한 호스트에서 다른 호스트로 패킷 손실을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타임아웃 및 긍정적인 승인 메커니즘을 제안합니다. TCP는 패킷을 전송하고 역방향 패킷 스트림으로 전달되는 응답(승인)을 기다립니다. 특정 패킷에 대한 승인이 수신되지 않으면 TCP가 재전송합니다. (이하 생략)

모든 재전송 정책에는 수신자가 중복 도착을 감지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이하 생략)

을 제15호증 92면

TCP는 인터넷 통신 시스템에 의한 손상, 손실, 중복 또는 순서 없이 전달된 데이터로부터 복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송된 각 옥텟에 시퀀스 번호를 할당하고 수신 TCP로부터 긍정적인 승인(ACK)을 요구함으로써 달성됩니다. 타임아웃 간격 내에 ACK를 받지 못하면 데이터를 재전송합니다. 수신기에서 시퀀스 번호는 순서가 맞지 않게 수신될 수 있는 세그먼트를 올바르게 정렬하고 중복을 제거하는 데 사용됩니다(제8면 3번째 문단).

옵션 필드에는 여러 옵션이 포함될 수 있으며 갑 옵션은 길이가 몇 옥텟(octet)일 수 있습니다. 옵션은 주로 테스트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타임스탬프를 전달합니다. 인터넷 프로토콜과 TCP는 모두 옵션 필드를 제공합니다(제86면 마지막 문단).

② 공중망에 대해서도 재전송 방식에 따른 중복수신 문제의 해결은 널리 알려진 기술적 과제이다(을 제16, 17호증 참고).

을 제16호증 10~11면

통합된 3G 네트워크에서의 서비스 품질(QoS)

(제92면, 10~17줄)

MAC 계층은 순방향 내지 역방향 트래픽 채널들, 제어 채널 및 접근 채널을 지원한다. 무선 링크 프로토콜(RLP) 데이터들의 흐름들에 대해여 재전송 및 중복 검출을 지원한다.

을 제17호증 6면

15.1 RLC: 무선 링크 제어

(제301면, 15.1 RLC: radio link control 첫문단)

LTE RLC는, WCDMA/HSPA와 유사하게, RLC SDU들로 또한 알려진 (헤더가 압축된) IP 패킷들을 PDCP에서 더 작은 단위들인 RLC PDU들로 분할하는 것을 담당한다. 그것은 또한 수신된 PDU들의 중복 제거 및 연결과 더불어 잘못 수신된 PDU들에 대한 재전송을 처리한다.

③ 중복방지 기능은 수신단의 '전송계층'에서 구현되는 것으로 네트워크 구성과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을 제18, 19호증 참고).

을 제18호증 3면

계층 4: 전송 계층

전송 계층(Transport layer)은 양 끝단(End to end)의 사용자들이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 (생략) 가장 잘 알려진 전송계층의 예는 TCP이다.

종단 간(End to end) 통신을 다루는 최하우 계층으로 종단 간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데이터를 전송하며, 기능은 오류검출 및 복구와 흐름제어, 중복검사 등을 수행한다.

을 제19호증 5면, 7~8면

두 개의 종단 간 프로토콜이 이제까지 정의되어 왔다. 첫 번째 것인 TCP(전송 제어 프로토콜)은 신뢰성 있는 연결-지향의 프로토콜로서 하나의 컴퓨터에서 시작된 데이터 흐름이 오류 없이 인터넷의 어떤 다른 컴퓨터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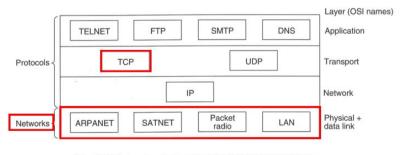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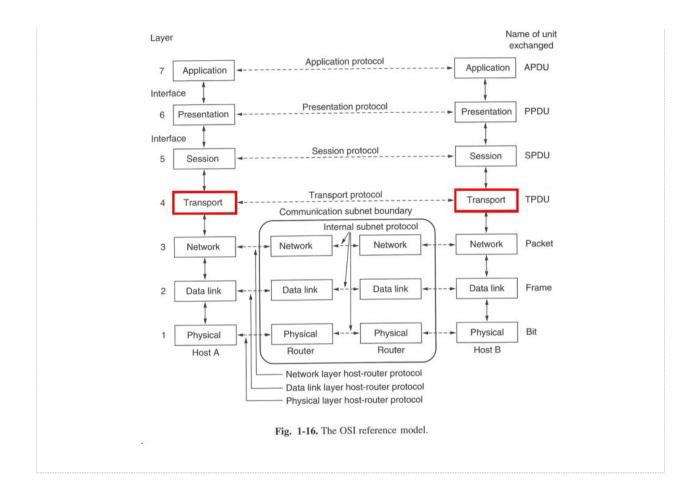


Fig. 1-19. Protocols and networks in the TCP/IP model initial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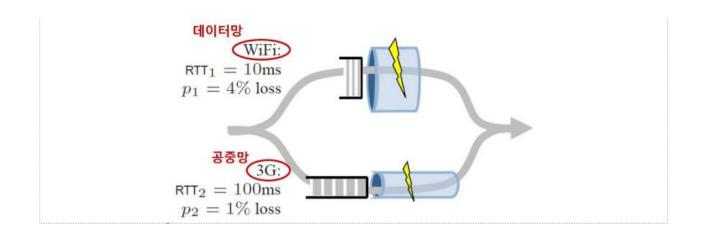


④ 데이터망 및 공중망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망 구성을 전제로 하여 TCP프로토콜을 적용하는 구성이 알려져 있다(을 제20호증 참고).

을 제20호증 15면

2.3 RTT 부정합 문제

EWTCP와 COUPLED는 모두 RTT가 동일하지 않을 때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제5절에서 실험에 의하여 예시된다. 이러한 이슈를 이해하기 위하여, 도 4와 같이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가진 무선 사용자에 대한 시나리오를 검토한다. 3G 경로는 통상적으로 많은 버퍼를 이용하고, 긴 지연과 낮은 탈락률을 가지며, 반면 WiFi 경로는 짧은 지연과 높은 탈락률을 가진다.



(나) 구체적 검토

통신 네트워크 분야에서 한번에 100%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의 전송이 불가능하다는 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데이터를 여러 번 재전송함으로써 전송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점, 재전송에 따른 중복 수신이 발생할 수 있고 중복 수신된 데이터를 무시한다는 점은 통신 네트워크 자체에 대한 기술상식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을 제14호증 및 을 제15호증은 TCP 프로토콜 내에서 데이터를 재전송하고 중복을 제거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고, 을 제16호증 및 을 제17호증은 3G 및 LTE 통신망(무선통신망)에서의 데이터 재전송 및 중복을 제거하는 기술에 관한 것인데, 각각 TCP 프로토콜을 적용하는 망과무선통신망에서의 재전송과 중복 제거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통신 네트워크를 운용하는 통신 사업자 수준에서 전송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되어야 할 기술들을 다루고 있을 뿐, TCP 프로토콜을 적용하는 망 및 무선통신망을 통해 이미 수신이 성공된 메시지 사이에 발생하는 이중 수신에 의한 중복 표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을 제18호증 및 을 제19호증은 수신단의 전송계층에서 TCP 기술이 구현되고 있음을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데이터망을 통한 메시지 수신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미 데이터망에 내재된 구성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데이터망과 공중망을 통해서 이미 수신이 완료된 메시지 즉, 메신저 어플리케이션과 문자 메시지 사이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을 제20호증은 두 개의 무선 인터페이스 (WiFi 및 3G)를 이용해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있어서 지연시간과 탈락율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개시하고 있을 뿐, 중복 수신의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제3항 발명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요약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통신 네트워크 분야의 기술상식과 을 제14 내지 19호증에 기재된기술은 통신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통신 사업자가 이미 적용하고 있거나 통신의 신뢰성을 위해 적용을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이러한 기술이 내재된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이미 수신이 완료된 개별적 메시지 사이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관련된 주지관용기술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선행발명 3은 SMS(공중망)을 통한 재전송 메시지의 중복 표시를 방지하기 위한 구성으로 이를 선행발명 1, 2와 결합하더라도 공중망으로 전송된 메시지의 중복 표시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뿐, 데이터망과 공중망으로 수신된 메시지의 중복 표시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전형적인 사후적 고찰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사후적 고찰을 통해 선행발명 3의 기술적 구성을 데이터망과 공중망의 이중 수신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검토결과의 종합

따라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 또는 선행발명 1 내지 3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제4항 내지 제8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 1) 선행발명 1 내지 3과의 대비
- 이 사건 제4항 내지 제8항 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을 인용하는 항으로서 이 사건 제3항 발명을 기술적 특징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선행발명 1, 2 또는 선행발명 1 내지 3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2) 선행발명 1 내지 5와의 대비

선행발명 4는 근거리 무선 네트워크 내의 수신단말에 수신된 메시지의 중복 제거를 위해 데이터 저장 영역에 저장된 메시지와 타임스탬프 데이터를 비교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고, 선행발명 5는 이동통신 단말기에 수신된 EMS 메시지의 각 세그먼트를 기저장된 EMS 메시지와 비교하여 모든 세그먼트가 동일한 경우 중복 메시지로 판단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으나, 동일한 메시지 채널을 통해 수신된 메시지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고 있을 뿐, 데이터망과 공중망과 같이 이종 망에서의 중복 메시지를 판단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행발명 4, 5를 선행발명 1 내지 3과 어떻게 결합하더라도 여전히 데이터망과 공중망을 통한 이중수신 문제를 해결할 구성을 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선행발명 4, 5를 선행발명 1 내지 3과 결합하더라도 이 사건 제4항 내지 제8항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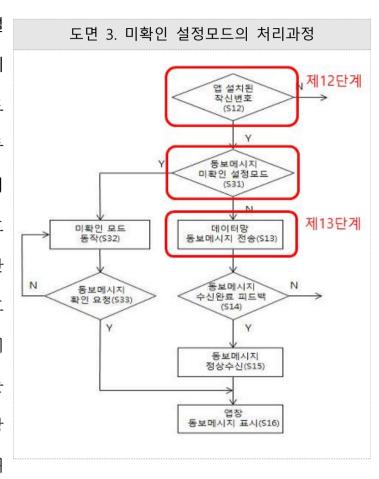
3) 검토결과

따라서 이 사건 제4항 내지 제8항 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5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제9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 1) 이 사건 제9항 발명의 구성요소 및 그 의미
- 이 사건 제9항 발명은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2단계와 상기 제13단계 사이에 상기

착신단말기에 동보메시지 미확인 설정모드가 있는지 판단하는 제31단계를 추가로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12단계는 '동보메시지 전송서버가 상기 동보메시지를 전송할 착신단말기의 전화번호와 상기 동보메시지의 수신을 위한앱이 설치된 착신단말기의 전화번호데이터베이스를 서로 비교하는 단계이고, 제13단계는 상기 동보메시지를 전송할 착신단말기의 전화번호가 상기 앱이 설치된 착신 전화번호에 해



당되면 상기 동보메시지 전송서버가 데이터망을 통하여 상기 착신단말기로 상기 동보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이다. 즉, 이 사건 제9항 발명의 구성요소 9는 제12단계와 제13단계 사이에서(도면 3 참조) 착신단말기에 데이터망을 통해 전송되는 동보메시지를 수신하지 않도록 하는 미확인 설정모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31단계 추가로 구비하는 것인데, 제12단계와 제13단계의 동작주체가 전송서버임이 명확한 이상 제31단계의 동작주체도 전송서버임이 명확하고, '미확인 설정모드'란 착신단말기 사용자가 데이터망을 통해 전송되는 메시지를 즉시 수신하지 않거나 메시지 표시를 보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착신단말기에서 미리 관련 내용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고, 제31단계는 사용자가 이러한 설정을 했는지 여부를 전송서버가 파악하는 단계라고 할 것이다.

2) 구체적 검토

이 사건 제9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 6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선행발명 1은 아래 단락의 기재와 같이 '스마트폰 사용자가 수신 거부 기능을 설정하면,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은 해당 카테고리에 속하는 기업식별코드가 포함된 메시지가 수신될 경우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고 수신 거부 이력을 남기는 구성(단락 [0061] 참조)'을 기재하고 있는 바, 스마트폰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에서 수신 거부를 설정하면 데이터망을 통해 전송된 메시지를 스마트폰에 표시하지 않도록 하는 수신 거부 설정 모드를 개시하고 있다. 다만, 선행발명 1에는 사용자가 스마트폰에서 메시지 수신 거부를 설정하고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는 동작에 대해서만 개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착신단말기가 수신 거부 기능이 설정된 수신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는 것인지, 사용자의 수신 거부 설정에 따라 메시징 처리서버(전송서버)가 착신단말기에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선행발명 1의 단락 [0061], 도면 5

[0061] 스마트폰 사용자가 푸쉬알람 기능을 설정하면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200)은 해당 카테고리에 속하는 기업식별코드가 포함된 메시지가 수신될 경우 푸쉬알람 기능을 통해 메시지의 수신을 소리로 알리고 카테고리 우측 상단에 신규 수신 메시지의 개수를 표시한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수신 거부 기능을 설정하면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200)은 해당 카테고리에 속하는 기업식별코드가 포함된 메시지가 수신될 경우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고 수신 거부 이력을 남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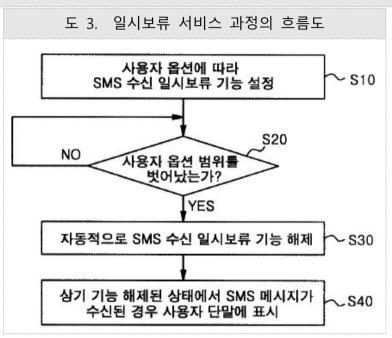
도면 5. 메시지 수신 설정 예시	
이전	완료
AA카드	수신 알람
BB카드	수신 알람
CC카드	수신 알람 다
DD카드	수신 알람
EE카드	수신 알람
FF카 <u>드</u>	수신 알람

나) 선행발명 6은 아래 단락의 기재와 같이 사용자가 SMS 수신 일시 보류를 설정하면 SMS 서버가 SMS 수신 메시지를 착신 순서에 따라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수신 일시보류 기능이 해제되면 SMS 서버가 사용자 단말에 착신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표시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다.

선행발명 6의 단락 [0046]~[0048], [0051], 도면 3

[0046] 상기 SMS 수신 일시보류 설정 조건(옵션)은 사용자가 희망 하는 특정 위치, 장소, 시간에 따 라 옵션을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 다.

[0047] 상기 SMS 수신 일시보류기능이 설정된 상태에서 제어부(200)는 사용자의 이동 단말이 특정 위치, 특정 장소의 이탈 여부및 기 설정된 시간의 초과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S20). 이 때, SMS 수신 메시지는 착신 순서에 따라SMS 서버(300)에 그대로 보관된다.



[0048] 그 상태에서, 상기 제어부(20)에서 **사용자의 이동 단말이 기 설정된 특정 위치, 특정**장소를 이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탈된 경계지역에서의 위치 및 장소에서 자동적으로
SMS 수신 일시보류 기능이 해제되도록 하여 SMS 수신이 가능하게 한다.

[0051] 그 후, 상기 SMS 수신 일시보류 기능이 해제된 상태에서 SMS 서버(300)에 SMS 메시지가 수신된 경우 사용자 액정 단말에 SMS 수신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 SMS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게 된다(S40).

다) 선행발명 1, 6은 모두 사용자가 메시지 수신을 거부하거나 일시 보류하는 기능

을 설정하기 위한 '메시지 표시 설정모드'를 착신단말기에 동일하게 구비하고 있다. 또 한, 선행발명 1에는 '수신 거부 설정모드'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동작주 체가 착신단말기인지 메시짓 처리 서버(전송서버)인지 명화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수신 거부 설정모드'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동작주체를 착신단말기로 할 지 메시징 처리 서버로 할지는 통상의 기술자에게 단순 설계변경사항에 불과하고, 그 로 인한 효과의 차이도 자명하게 예상되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더하여 선행발명 6 에는 사용자가 '메시지 수신 일시보류' 기능을 설정하면 SMS 서버가 수신 메시지를 보 관하는데 이는 SMS 서버가 착신단말기에 '메시지 수신 일시보류' 기능이 설정되었는지 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6을 결합하여 메시징 처리 서버(전송서버)가 착신단말기에 메시지 '설정모드'가 있는지 판단하는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 한편, 선행발명 6과 선행발명 1은 전송서버를 통해 메시지를 전송하고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메시지 표시를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있도록 한 메시지 전송시스템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같고, 해당 기술분야에서 수신 거부 또는 일시보류의 동작주체를 착신단말기로 할지 전송서버로 할지는 통상의 기술자에게 단순 설계변경사항에 불과하여 선행발명 6의 구성을 선행발명 1에 적용하 는데 별다른 방해요인이 없으며, 선행발명 6의 구성을 선행발명 1에 적용시키는데 과 도한 설계변경이 요구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선행발명 6의 구성을 선행발명 1. 2에 결합하여 이 사건 제9항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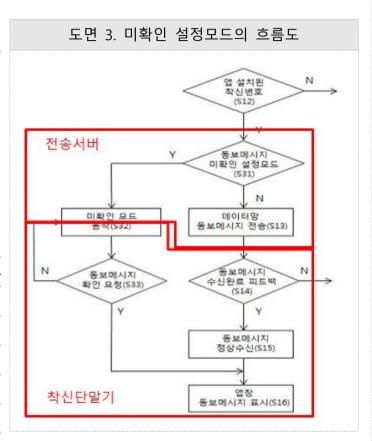
원고는, 이 사건 제9항 발명의 동작주체가 '착신단말기'인 반면, 선행발명 6은 서버를 포함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의 청구범위에는 "상기 제12단계와 상기 제13단계 사이에 상기 착신단말기에 동보메시지 미확인 설정모드가 있는지 판단하는 제31단계를 추가로 구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제31단계가 제12단계와 제13단계 사이에 추가로 구비되며, 제12단계는 "상기 동보메시지 전송서버가 상기 동보메시지를 전송할 착신단 말기의 전화번호와 상기 동보메시지의 수신을 위한 앱이 설치된 착신단말기의 전화번 호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비교하는 단계"이고. 제13단계는 "상기 동보메시지를 전송할 착신단말기의 전화번호가 상기 앱이 설치된 착신 전화번호에 해당되면 상기 동보메시 지 전송서버가 데이터망을 통하여 상기 착신단말기로 상기 동보메시지를 전송하는 단 계"이므로 제12다계와 제13다계의 동작주체는 동보메시지 전송서버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그 사이에 추가되는 제31단계 또한 동보메시지 전송서버가 동작주체임을 쉽 게 추론할 수 있으며, 제31단계의 동작주체를 착신단말기로 보는 경우 이 사건 제9항 발명을 인용하는 제10항 및 제11항 발명에서 메시지를 전송 보류하거나 일부 내용을 전송하는 구성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제31단계의 동작주체를 착신단말기로 볼 수 없 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특허의 명세서에는 "동보메시지 전송서버가 (중략) 착 신단말기의 사용자가 동보메시지의 수신시각 제한, 회의로 인한 동보메시지 수신제한 등과 같은 이유로 인한 동보메시지 미확인 설정모드가 있는지 판단(제31단계)하는 단 계를 추가로 구비할 수 있다(단락 [0029], 도 3 참조)."고 기재되어 동보메시지 전송서 버가 미확인 설정모드가 있는지 판단하는 동작 주체로 기재되어 있고, 도면 3의 개시 도 이에 부합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특허의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및 도 면과 부합되지 않는 주장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단락 [0029], [0030], 도면 3

[0029]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동보 메시지 동보메시지 미확인 설정모드인 경

우의 처리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동보메시지 전송서버가 동보메시지 전송 요청 대상 착신단말기가 동보메시지 수신을 위한 앱이 설치된 착신단말기의 전화번호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동보메시지 전송서버 내에 포함되는 앱이 설치된 착신단말기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와 서로 비교(제12단계)하여, 앱이설치된 착신번호에 해당(제12단계의 Y인 경우)되면 착신단말기로 데이터망을 이용하여 동보메시지를 전송(제13단계)하기 전에 착신단말기의 사용자가 동보메시지의 수신제한 등과로 인한 동보메시지 수신제한 등과



같은 이유로 인한 동보메시지 미확인 설정모드가 있는지 판단(제31단계)하는 단계를 추가로 구비할 수 있다.

[0030] 이러한 판단결과 착신단말기에 미확인 설정모드가 없는 경우 동보메시지 전송서버는 데이터망으로 동보메시지를 착신단말기로 전송하며, 착신단말기에 미확인 설정모드가 있는 경우 동보메시지 메시지 전송 보류, 동보메시지 일부 내용을 전송하여 표시 또는 동보메시지를 전송하지만 상기 착신단말기의 앱에서 표시 보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미확인 설정모드로 동작(제32단계)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4) 검토결과

따라서 이 사건 제9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 6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라. 이 사건 제10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10항 발명의 구성요소 및 그 의미

이 사건 제10항 발명은 이 사건 제9항 발명을 인용하는 항으로서 "상기 제31단계에서 상기 착신단말기에 상기 미확인 설정모드가 없는 경우 상기 제13단계를 수행하며, 상기 착신단말기에 상기 미확인 설정모드가 있는 경우 상기 동보메시지의 메시지 전송보류(이하 '선택구성 1'이라 한다), 상기 동보메시지의 일부 내용을 전송하여 표시(이하 '선택구성 2'라 한다) 또는 상기 동보메시지를 전송하지만 상기 착신단말기의 상기 앱에서 표시 보류(이하 '선택구성 3'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미확인 모드로 동작하는 제32단계를 추가로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즉, 착신단말기에 미확인 설정모드가 없는 경우 전송서버가 데이터망을 통하여 착신단말기로 동보메시지를 전송(제13단계)하고, 착신단말기에 미확인 설정모드가 있는 경우 선택구성 1 내지 3 중어느 하나 이상의 미확인 설정모드로 동작하는 것이다.

2) 구체적 검토

선행발명 1에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수신 거부 기능을 설정하면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200)은 해당 카테고리에 속하는 기업식별코드가 포함된 메시지가 수신될 경우메시지를 표시하지 않고 수신 거부 이력을 남기는 구성(단락 [0061] 참조)"을 기재하고있는 바, 단말기 사용자가 수신 거부 기능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데이터망을 통해 수신된 메시지를 착신단말기에 표시함으로써 이 사건 제10항 발명의 구성요소 10-1이쉽게 도출될 수 있고, 수신 거부 기능을 설정한 경우 데이터망을 통해 전송된 메시지를 착신단말기에 표시하지 않는 구성을 동일하게 개시하고 있으며, 여기에 선행발명 6을 결합하면 수신 거부 기능이 설정된 경우 메시징 처리 서버(전송서버)가 메시지를

보관하였다가 나중에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메시지를 전송 보류하는 이 사건 제10항 발명의 구성요소 10-2의 선택구성 1이 쉽게 도출될 수 있다. 선택구성 1이 쉽게 도출 될 수 있는 이상 선택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선택구성 2, 3에 대해 더 나아가 살필 필 요 없이 이 사건 제10항 발명의 구성요소들은 선행발명 1, 6으로부터 쉽게 도출된다.

3) 검토결과

따라서 이 사건 제10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 6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마. 이 사건 제1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제11항 발명의 구성요소 및 그 의미

이 사건 제11항 발명은 이 사건 제10항 발명을 인용하는 항으로서 "상기 제32단계 이후 상기 착신단말기로부터 동보메시지 확인 요청이 있는 지를 판단하고, 상기 동보메시지 확인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기 제32단계의 상기 미확인 모드로 동작을 지속하며, 상기 착신단말기로부터 상기 동보메시지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동보메시지 전송 보류인 경우에는 메시지를 상기 동보메시지 전송서버로부터 다운로드, 동보메시지 일부 내용 전송인 경우에는 잔여 메시지 또는 전체 내용을 상기 동보메시지 전송서버로부터 다운로드 또는 상기 착신단말기의 앱에서 표시 보류인 경우에는 앱에서의 착신표시를 활성화하는 제33단계 및 상기 착신단말기의 앱에서 동보메시지가 표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즉, 착신단말기로부터 동보메시지 확인 요청이 있으면, 동보메시지가 전송서버에 보류되어 있는 경우(선택구성 1) 동보메시지를 전송서버로부터 다운로드하고, 전송서버가 일부 내용을 전송한 경우(선택구성 2) 잔여 메시지 또는 전체 메시지를 전송하며, 착신단말기의 앱에서 표시를 보류하고 있는 경우(선택구성 3)

앱에서의 표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2) 구체적 검토

선행발명 1에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수신 거부 기능을 설정하면 메시지가 수신될 경우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고 수신 거부 이력을 남기고 있을 뿐, 수신 거부된 메시지를 전송서버에 저장하고 있다가 사용자의 메시지 확인 요청에 따라 착신단말기에서 메시지를 다시 표시하도록 하는 구성에 대해 기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선행발명 6에는 사용자가 SMS 수신 일시 보류를 설정하면, SMS 메시지를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하지 않고 SMS 서버에 저장하였다가, SMS 수신 일시 보류가 특정 조건에서 해제되는 경우(사용자가 미리 해제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사용자가 메시지 확인을 요청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 SMS 서버에 저장된 SMS 메시지를 순차적으로 사용자 단말기로 전송하여 표시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다. 선행발명 6의 이와 같은 구성을 선행발명 1에 적용시키는 경우 수신 거부 기능이 설정되어 수신 거부된 메시지를 메시징 처리서버에 저장하였다가 수신 거부 기능이 해제되면(사용자의 메시지 확인요청이 있으면) 메시징 처리서버에 저장된 메시지를 착신단말기로 전송하고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검토

원고는, 데이터망과 공중망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전체적 구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이 사건 제11항 발명에 기재된 기술적 사항만을 분리·관찰하여 선행발명 6의 'SMS 서버가 SMS 수신의 일시보류 기능을 확인하고, SMS 메시지를 보관하였다가 일시보류 기능이 해제되는 경우 사용자의 단말에 SMS 서버에 저장된 메시지를 전송하고 표시한다는 구성'과 대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발명 1, 2는 데이터망과 공중망을 통해 메시지를 전송하는 이 사건 특허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단지 사용자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수신 거부한 메시지를 다시 착신단말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구성을 포함하지 않고 있을 뿐인데, 메시지 전송시스템이라는 기술분야가 같고, 양 발명을 결합하는데 특별한 방해 요인이 존재하지 않으며, 결합에 과도한 설계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선행발명 6을 선행 발명 1, 2에 결합함으로써 이 사건 제11항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검토결과

따라서 이 사건 제11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 6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바. 소결

이상의 검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제3항 내지 제8항 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② 이 사건 제9항 내지 제11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 6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3항 내지 제8항 발명에 관한 부분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고, 이 사건 제9항 내지 제11항 발명에 관한 부분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제3항 내지 제8항 발명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우성엽

판사 임영우

판사 김기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갑 제3호증) 중 발명의 설명의 주요 내용 및 도면

가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데이터망 및 공중망을 이용한 동보메시지2) 전송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발신단말기로부터 전송된 동보 메시지 전송요청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착신 단말기로 동보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착신단말기 전화번호가 앱(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인 경우에는 데이터망을 통하여 동보 메시지를 전송하고, 착신단말기가 앱을 통하여 동보 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모바일폰,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지 않은 스마트폰인 경우와 데이터망을이용하여 전송된 동보메시지가 착신단말기에 수신되었는지 불명확한 경우에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공중망과 연결하여 동보메시지를 전송하여 동보메시지를 착신단말기에 비교적 낮은전송비용으로 반드시 착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망을 이용하여 전송된 동보메시지의 이중수신에 따르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망 및 공중망을 이용한 동보메시지 전송방법에 관한 것이다.

대 **배경기술**

[0002] 최근 인터넷 및 이동통신관련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기업 등 많은 고객을 보유한 다양한 형태로 고객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향이 증가 추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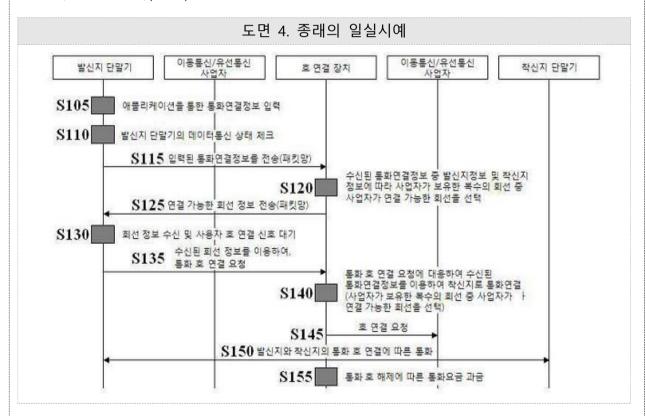
[0003]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고객에게 이메일 메시지, 음성, FAX, 문자 메시지, SNS 등을 통해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 왔으며, 이를 위하여 많은 비용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메일 전송이 아닌 문자 또는 음성 메시지로서 고객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접 메시지 전송 시스템을 자체 구축하거나 이를 서비스하는 서비스 사업자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송하고 있다.

[0004]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기업용 메시지 전송 시 수신 착신 단말기의 종류에 따라 데이터망을 이용한 메시지 전송,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메시지 전송을 선택적으로 구현함으로써, 메시지 전송에 소요되는 투입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0005]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0-1089709에서는 호 연결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한

휴대 단말기의 통신 회선을 연결할 수 있는 호 연결 장치 및 그 방법에 대하여 개시하고 있으며, 호 관리부는 발신지 호와 착신지 호를 생성하기 위해 사업자가 보유한 복수의 회선 중 통화요금이 가장 적게 과금되는 회선을 선택하여 발신지 회선 및 착신지 회선으로 사용하고, 복수의 회선은 패킷망 또는 써킷망³⁾ 중 어느 하나이며, 써킷망이 선택되는 경우에는 써킷망 중 통화요금이 가장 적게 과금되는 회선을 이용하고 있다.

[0006] 이를 도 4를 참조하여 설명하면, 발신지 단말기의 네트워크 설정 상태가 패킷망 또는 써킷망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경우, 입력된 통화연결정보는 패킷망을 이용하여 호 연결 장치로 전송된다(S115).



[0007] 호 관리부는 저장된 통화연결정보에서 발신지 정보를 추출한 후, 호 연결 장치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보유한 복수의 회선 중에서 발신지 단말기와 호 연결을 생성할 수 있는 발신지 회선을 선택(S120)하며, 발신지 회선은 사업자가 보유한 복수의 회선 중에서 호 연결 장치와 발신지 단말기 간에 생성되는 발신지 호에 발생하는 통화요금이 가장 저렴한 회선을 선택하고 있다.

[0008] 이때, 연결되는 발신지 회선은 패킷망 또는 써킷망 중 어느 하나를 이용하여 연결되며, 발신지 회선 및 착신지 회선을 각각 패킷망의 회선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발신지 단

말기와 착신지 단말기 간에 무료 통화 호가 생성될 수 있다.

[0009] 그러나, 이러한 호 연결장치는 패킷망 또는 써킷망중 보다 저렴한 회선을 선택하여 연결함으로써 통화 또는 메시지 전송에 소요되는 요금 절감의 달성은 가능하나, 패킷망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발신하는 경우 패킷망의 불안정성 등의 이유로 반드시 착신단말기에 안 정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여야 하는 경우 전송요금의 절감과 전송한 메시지가 착신단말기에 반드시 수신되어야 하는 경우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데 해결하고자하는 과제

[0010] 본 발명은 데이터망을 이용하여 동보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동보메시지의 전송에 소요되는 요금의 절약이라는 목적은 달성 가능하나, 동보메시지가 반드시 고객에게 수신되기를 희망하는 기업 등의 경우에는 데이터망의 이용에 의한 요금의 절약뿐만 아니라 데이터망이 불안정한 경우에 공중망을 이용하여 동보메시지가 반드시 착신단말기에 수신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0011] 또한, 본 발명은 데이터망 및 공중망을 이용하여 동보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데이터망과 공중망을 통하여 동일한 동보 메시지가 이중으로 착신단말기에 수신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라 **효과**

[0013] 본 발명은 일실시예에 따르면, 동보메시지가 반드시 고객에게 수신되기를 희망하는 기업 등에게 데이터망의 이용한 동보메시지의 전송에 요금의 절약뿐만 아니라 데이터망이 불안정한 경우에 공중망을 이용하여 동보메시지가 반드시 착신단말기에 수신 가능하도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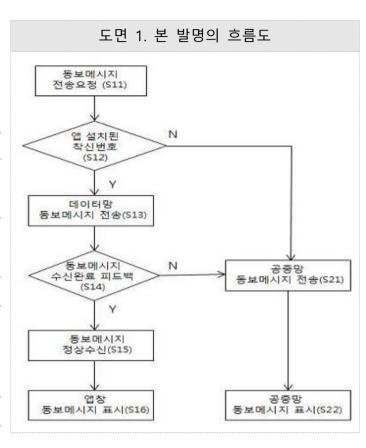
[0014] 또한, 데이터망 및 공중망을 이용하여 동보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데이터망과 공중 망을 통하여 동일한 동보 메시지가 이중으로 착신단말기에 수신되어 표시되는 경우를 방지함으로써 착신단말기의 사용자가 동보메시지의 이중수신에 의한 혼동을 방지할 수 있다.

때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9]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데이터망 및 공중망을 이용한 동보메시지 전송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데이터망 및 공중망을 이용한 동보메시지 전송방법은 주로 고객의 컴퓨터, 통신단말기 등인 발신단말기로부터 전송되어야할 동보메시지 내용 및 착신단말기 전화번호(고객별로 전송서버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경우

를 포함함)를 포함하는 동보메시지 전 송요청을 동보메시지 전송서버가 수신 한다(제11단계).

[0020] 동보메시지 전송서버가 동보메시지 전송 요청 대상 착신단말기가 동보메시지 수신을 위한 앱이 설치된 착신단말기의 전화번호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동보메시지 전송서버 내에 포함되는 앱이 설치된 착신단말기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와 서로 비교(제12단계)하여, 앱이 설치된 착신번호에 해당되면 동보메시지 전송서버가 동보메시지 전송에 소요되는 요금이 무료이거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이터망을 통하여 상기 착신단말기로 동보메시지를 전송한다(제13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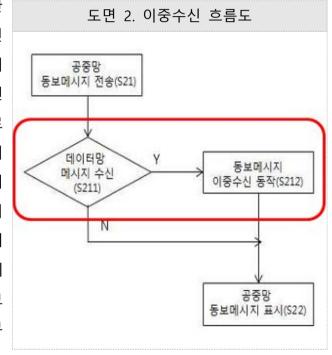
[0021] 이러한 동보메시지 전송서버로부터의 동보메시지 전송에 대하여 착신단말기에 설치된 앱에서 동보메시지가 수신이 완료되었음을 동보메시지 전송서버로 피드백(제14단계)하며, 착신단말기로부터 동보메시지 수신완료 메시지를 동보메시지 전송서버가 수신한 경우동보메시지가 착신단말기에 정상적으로 수신되어 착신단말기의 앱에 동보메시지가 표시(제15단계 및 제16단계)되며, 이를 통하여 별도의 공중망에 의한 동보메시지를 재전송할 필요가없어 공중망에 의한 동보메시지 전송에 소요되는 요금을 절감하는 것이 달성이 가능하다. [0022] 그러나, 착신단말기가 동보메시지 수신용 앱이 설치되지 않아 데이터망으로 동보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는 경우와, 착신단말기에 동보메시지 수신용 앱이 설치되어 있지만 통신망 불량, 착신단말기 오프상태, 데이터 요금제 초과 등으로 착신단말기의 앱이 동보메시지 전송서버로 동보메시지 수신완료 메시지를 피드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보메시지가 데이터망으로 전송될 수 없거나 또는 동보메시지가 착신단말기에 수신되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0023] 이러한 경우, 동보메시지 전송서버는 동보메시지의 반드시 수신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데이터망으로 동보메시지가 전송되어 수신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동보메시지 전송서버가 공중망을 통하여 동보메시지를 다시 전송(제21단계)하며, 동보메시지를 수신한 착신단말기는 공중망으로 전송된 동보메시지를 표시(제S22단계)하게 된다.

[0024] 여기서, 동보메시지 전송서버는 착신단말기로부터 동보메시지 수신완료 메시지를 동보메시지 전송서버가 동보메시지를 전송한 후 미리 설정된 시간동안 피드백을 받아 착신단말기에 동보메시지 수신완료 여부를 판단한다.

[0025] 도 2는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동보메시지의 이중수신을 고려한 동보메시지 표

시방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또한, 동보메시지의 반드시 수신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보메시지 전송서버가 동보메시지 수신용 앱이 설치된 착신단말기에 대하여 동보메시지 수신완료메시지를 피드백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망 및 공중망을 통하여 이중으로 전송되었을 가능성이 상존하게 되며, 이와 같이이중으로 전송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착신단말기에 설치된 앱에서 동보메시지 전송서버가 데이터망으로 전송한 동보메시지가 착신단말기에 수신되었는지 여부를 판단(제211단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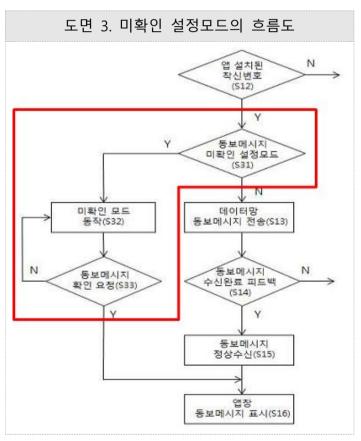
[0026] 이러한 판단결과 데이터망으로 전송된 동보메시지가 상기 착신단말기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 상기 착신단말기에 공중망으로 전송된 동보메시지가 표시(제22단계)되며, 데이터망으로 동보메시지가 착신단말기에 수신된 경우, 착신단말기에 데이터망 및 공중망으로 동일한 동보메시지가 이중으로 수신함에 따른 이중수신 동작을 수행(제212단계)한 후 착신단말기에 공중망으로 전송된 동보메시지가 표시(제22단계)된다.

[0027] 제212단계의 이중수신 동작은 동보메시지가 이중으로 수신하였음을 다양한 형태의 동작이 가능하며, 이중 착신단말기의 앱에 이중 수신되었음과 관련된 표시 동작, 착신단말

기의 앱에 수신된 동보메시지를 표시하지 않는 비활성화 동작 또는 착신단말기의 앱에 수신된 동보메시지를 삭제하는 동작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통하여 사용자가 동보메시지가 이중으로 수신하였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착신단말기의 앱에 수신된 동보메시지를 표시할 수 없는 상태(비활성화 또는 삭제)에 이르게 함으로써 착신단말기 사용자의 동보메시지 이중 수신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0028] 이러한 동보메시지의 이중 수신의 판단은 착신단말기에 설치된 앱에서 데이터망 및 공중망으로 전송된 동보메시지의 발신자, 발신시각 또는 내용 중 어느 하나 이상과 비교하여 판단되며, 이중 동보메시지 발신시각에 의한 비교는 공중망으로 동보메시지를 전송한 발신시각과 데이터망으로 발신한 시각에 미리 설정된 수신완료 피드백 시간을 합한 시각을 비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0029]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동보 메시지 동보메시지 미확인 설정모드인 경우의 처리과정을 도시한 흐름도이다.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동보메시지 전송서버가 동보메시지 전송 요청 대상 착신단말기가 동보메시지 수신을 위한 앱이 설치된 착신단말기의 전화번호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동보메시지 전송서버 내에 포함되는 앱이 설치된 착신단말기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와 서로 비교(제12단계)하여, 앱이 설치된 착신번호에 해당(제12단계의 Y인 경우)되면 착신단말기로 데이터망을 이용하여 동보메시지를 전송(제13단계)하기 전에 착



신단말기의 사용자가 동보메시지의 수신시각 제한, 회의로 인한 동보메시지 수신제한 등과 같은 이유로 인한 동보메시지 미확인 설정모드가 있는지 판단(제31단계)하는 단계를 추가로 구비할 수 있다. [0030] 이러한 판단결과 착신단말기에 미확인 설정모드가 없는 경우 동보메시지 전송서버는 데이터망으로 동보메시지를 착신단말기로 전송하며, 착신단말기에 미확인 설정모드가 있는 경우 동보메시지 메시지 전송 보류, 동보메시지 일부 내용을 전송하여 표시 또는 동보메시지의를 전송하지만 상기 착신단말기의 앱에서 표시 보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미확인 설정모드로 동작(제32단계)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0031] 이와 같은 미확인 설정모드로의 동작은 착신단말기로부터 동보메시지 확인 요청이 있는 지를 판단하고, 동보메시지 확인 요청이 없는 경우(제33단계의 N인 경우)에는 미확인 설정모드로 동작을 지속하며, 착신단말기로부터 동보메시지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제33단계의 Y인 경우) 동보메시지 전송 보류인 경우 메시지를 상기 동보메시지 전송서버로부터 다운로드, 동보메시지 일부 내용 전송인 경우 잔여 메시지 또는 전체 내용을 상기 동보메시지 전송서버로부터 다운로드 또는 상기 착신단말기의 앱에서 표시 보류인 경우 앱에서의 착신표시를 활성화함(제33단계)으로서 미확인 설정모드를 해제하고, 착신단말기의 앱에서 에서 동보메시지가 표시(제17단계4)되도록 한다.

²⁾ 동보메시지(broadcast message): ①중앙 처리 시스템에서 각 단말 장치의 이용자에게 통지되는 공보(公報) 메시지나 단말 이용자 사이의 사신(私信) 메시지. ②복수의 논리 수신처에 송신되는 메시지.(네이버 IT용어사전)

³⁾ 패킷(packet): 데이터 전송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묶음 (네이버 지식백과) 패킷망(packet network): 패킷을 처리할 수 있는 통신망으로 통상 인터넷망을 의미하며, 통신자원(대역폭, 경로 등) 예약이 없 어 지연 또는 경합이 발생함

서킷망(circuit network): 일반적인 전화망을 의미하며, 통신자원 예약을 통해 신뢰성 있는 통신을 할 수 있으나 통신자원이 낭비됨(전화 통화 시 소리를 내지 않아도 요금을 냄)

⁴⁾ 제16단계의 오기

선행발명 1(을 제6호증)의 주요 내용 및 도면

가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스마트폰 등의 휴대 단말에 대량메시지를 전송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기업에서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대량의 단문 메시지 서비스(Short Message Service : 이하 "SMS"라 함) 및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Multimedia Message Service, Long Message Service를 포함함 : 이하 "MMS"라 함)를 전송하는 방법 중 휴대 단말 사용자를 대상으로 SMS 및 MMS를 새로운 형태의 메시지로 변환하여 전송하고 휴대 단말로 전송된 메시지를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이 발신기업의 업종 및 메시지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저장하고 개인에게 메시지 수신을 알리고 보여주는 대량메시지 전송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내경기술

[0005] 최근 활발히 보급되고 있는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단말을 이용하여 메시지 발송을 하고자 하는 등록된 기업이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 단말로 SMS 및 MMS를 새로운 메시지로 변환하여 전송할 수 있게 한다면 SPAM 성격의 SMS 및 MMS로 인한 개인의 불편과 피해를 해소할 수 있으며, 기존의 SMS 및 MMS의 내용을 포함 하는 특정메시지 포맷으로 변환한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기업 입장에서는 메시지를 SMS와 MMS로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고가의 MMS 전송비용도 절감하는 동시에 개인 휴대 단말 사용자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도 더욱 효과적인 광고 매체로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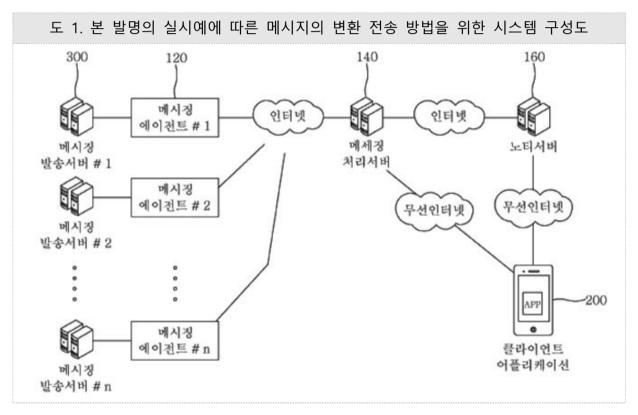
데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0006] 본 발명의 목적은 기존 SMS 및 MMS를 이용하여 대량의 메시지를 개인 휴대 단말로 전송하던 기업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개인에게는 SMS 및 MMS를 포함하는 특정메시지 포맷으로 변환된 메시지를 전송하고, 휴대 단말의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은 수신된 메시지를 발송 기업의 업종에 따라 분류하여 저장하고, 개인의 설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이 발송한 메시지는 수신을 거부하고 즉시 확인이 필요한 메시지는 소리와 화면으로 알리고 즉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메시지는 확인 필요 상태로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기존의 무분별한 기업용 SMS 및 MMS 수신으로 인한 개인의 불편과 피해를 없애고 기업의 메시지 발송 비용을 절감하며 기존SMS와 MMS의 메시지 형식을 포함한 더욱 유연한 새로운 메시지 형태를 제공

함으로써 기업용 메시지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때 발명을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26]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대량메시지 전송 시스템(100)은, 메시징처리 서버(1205), 메시징 발송 서버(300)에 설치되어 있는 메시징 에이전트(1406), 푸쉬 서비스를 위한 노티(Noti)서버(160) 및 메시지 수신을 위한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200)을 포함한다.



[0027] 메시징 처리 서버(120)는, 발송대상 문자메시지의 수신이동 디렉토리 번호(mobile directory number, 이하 MDN)를 메시징 에이전트(140)로부터 전송받고, 전송받은 수신 MDN을 미리 저장되어 있는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200)이 설치된 휴대 단말의 MDN 집합과 비교하여, 그 비교 결과 값을 메시징 에이전트(140)로 전송하고, 메시지 발송 서버(300)로부터 전송받은 문자메시지를 특정메시지 포맷으로 변환한 메시지를 발송대상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200)으로 전송한다.

[0028] 위 수신 MDN은 수신 받을 휴대 단말의 전화번호를 의미하며, 메시징 발송 서버(300)에서 관리자로부터 입력되거나, 기 설정된 프로그램 등에 의하여 자동으로 생성된다.

[0029] 여기서, 특정메시지 포맷은, SMS 구성요소인 발신번호, 착신번호 및 80byte 텍스트와, MMS 구성요소인 한글텍스트 1000자, 사진, 음악, 동영상 및 기업의 홍보용 웹페이지 접속을 위한 URL을 포함한다.

[0030] 또한, 메시징 처리 서버(120)는, 메시징 발송 서버(300)로부터 전송받은 문자메시지에, 해당 메시징 발송 서버(300)와 일치하는 기업식별코드를 삽입하여 상기 특정메시지 포맷으로 변환한 메시지를 발송대상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200)으로 전송한다.

[0031] 여기서, 기업식별코드는 기업의 업종을 나타내는 코드로서, 기업의 업종에 따라 최상 위 단계, 상위 단계, 중간 단계, 하위 단계까지 4가지 수직 단계로 분류할 수 있도록 순서가 있는 4개의 숫자 또는 문자로 이루어진다.

[0032] 메시징 에이전트(140)는, 상기 비교 결과 값을 메시징 처리서버(120)로부터 전송받고, 상기 비교 결과 값에 따라,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200)이 설치된 휴대 단말의 MDN 집합에 속하는 수신 MDN의 해당 발송대상 문자메시지는 메시징 발송 서버(300)가 메시징 처리서버(120)로 전송하도록 하고, 상기 MDN 집합에 속하지 않는 수신 MDN의 해당 발송대상 문자메시지는 메시징 발송 서버(300)가 이동통신망을 통해 해당 휴대 단말에 전송하도록 한다.

[0033] 여기서, 이동통신망은 SMSC(Short Message Service Center) 또는 MMSC(Multimedia Messaging Services Center)을 포함한다.

[0034] SMSC/MMSC란 무선단말기에 SMS/MMS 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서버와 같은 것으로 현재는 대부분의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이동전화가입자를 위한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 플랫폼으로 사용되고 있다.

[0035] 노티 서버(160)는, 메시징 처리 서버(120)로부터 특정메시지 포맷으로 변환된 메시지를 전송받고, 전송받은 메시지에 푸쉬 알람 기능을 적용하여 발송대상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200)으로 전송한다.

[0036]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200)은, 상기 특정메시지 포맷으로 변환된 메시지를 수신받고, 수신받은 메시지로부터 기업식별코드를 추출하여 추출된 기업식별코드와 일치하는 기업분류 카테고리에 해당 메시지를 저장한다.

[0037] 또한,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200)은, 기업분류 카테고리별로 메시지의 수신 여부를 설정할 수 있으며, 수신하는 것으로 선택된 기업분류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각 메시지의 수신

시 알람 여부를 설정할 수 있고, 각 기업분류 카테고리별로 수신된 신규 메시지의 개수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038] 또한,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200)은, 기업분류 카테고리가 그 하위 카테고리들을 포함하는 경우, 그 하위 카테고리별로도 메시지의 수신 여부를 설정할 수 있으며, 수신하는 것으로 선택된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각 메시지의 수신시 알람 여부를 설정할 수 있고, 각 하위 카테고리별로 수신된 신규 메시지의 개수를 표시할 수 있다.

[0039] 또한,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200)은, 기업명이 표시된 카테고리를 단말기 화면에 표시하는 경우, 기업식별코드별로 설정된 기업 광고이미지를 기업명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0060]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200)은 도 5의 예시와 같이 카테고리별 푸쉬 알람설정(즉, 가

청 설정)을 할 수 있는 설정 기능을 제공한다. 즉, 메시지가 왔을 때 소리를 나게 하거나 안 나게 하 는 설정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0061] 스마트폰 사용자가 푸쉬알람 기능을 설정하면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200)은 해당 카테고리에 속하는 기업식별코드가 포함된 메시지가수신될 경우 푸쉬알람 기능을 통해 메시지의 수신을 소리로 알리고 카테고리 우측 상단에 신규 수신 메시지의 개수를 표시한다. 스마트폰 사용자가수신 거부 기능을 설정하면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200)은 해당 카테고리에 속하는 기업식별코드가 포함된 메시지가 수신될 경우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고 수신 거부 이력을 남긴다.

도 5.							
이전	완료						
AA카드	수신 알람						
BB카드	수신 알람						
CC카드	수신 알람 다						
DD카드	수신 알람						
EE카드	수신 알람						
FF카드	수신 알람 다						
10.							

[0062] 스마트폰 사용자가 푸쉬알람 기능을 해제하면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200)은 해당 카테고리에 속하는 기업식별코드가 포함된 메시지가 수신될 경우 푸쉬알람 기능 없이 카테고리우측 상단에 신규 수신 메시지의 개수를 표시한다.

^{5) 140}의 오기.

^{6) 120}의 오기.

선행발명 2(을 제7호증)의 주요 내용 및 도면

게 기술분야 및 배경기술

[0001] 본 발명은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에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메시지 서비스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0003]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 망을 통하여 메시지들을 전송할 수 있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사용자들은 기존의 단문 메시지보다 저렴하게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메시지들을 송/수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송/수신되는 메시지들은 기존의 단문 메시지보다 큰 전송 용량을 갖는다.

터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0004]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에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제1 메시지를 전송한다. 전송 실패 제1 메시지와 대응하는 제2 메시지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달하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0005]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메시지 전송 시스템을 제공한다.

데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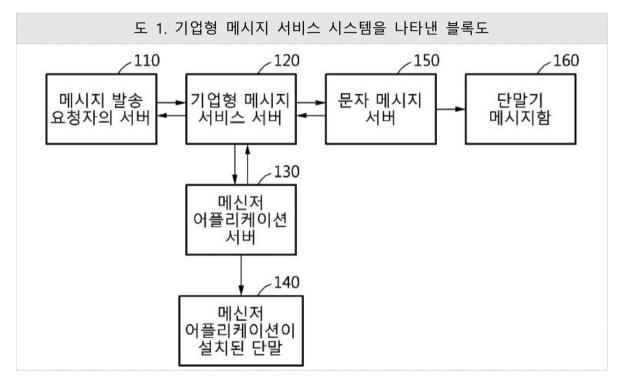
[0031] 도 1은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시스템을 나타낸 블록도이다.

[0032] 도 1을 참조하면,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시스템은 메시지 발송 요청자의 서버(110),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120),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130),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단말(140), 문자 메시지 서버(150), 단말기 메시지 함(160)을 포함한다.

[0033] 메시지 발송 요청자의 서버(110)는 사용자의 핸드폰번호, 메시지 내용 및 메시지 키를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120)로 전송할 수 있다. 이 때, 메시지 발송 요청자는 메시지들을 전송하고자 하는 자로서, 본 발명에 따른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의 가입자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메시지 발송 요청자는 사용자들 각각으로 신용 카드의 사용 알림 메시지, 사용 내역 메시지, 이벤트 메시지 등을 전송하기를 원하는 신용카드사일 수 있다.

[0034]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120)는 메시지 발송 요청자의 서버(110)로부터 전송된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다.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120)는 메시지 수신자가 메신저 어플리케이

선으로 메시지의 수신을 원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120)는 메시지 수신자가 기존의 단문 메시지로만 메시지의 수신을 원하는지, 아니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및 단문 메시지 두 개의 방식으로 메시지의 수신을 원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0035] 만약, 메시지 수신자가 기존의 단문 메시지로만 메시지의 수신을 원한다면,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120)는 문자 메시지 서버(150)로 메시지 발송 요청자의 서버(110)로부터 수신된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 때, 문자 메시지 서버(150)는 단문 메시지의 형태로 그 메시지를 단말기 메시지 함(160)으로 전송한다.



[0036] 반대로, 메시지 수신자가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및 단문 메시지 두 개의 방식으로 메시지 지의 수신을 원한다면,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120)는 우선적으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130)로 메시지의 전송을 요청한다. 이 때,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130)는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120)로부터의 요청에 응답하여, 사용자의 단말에 설치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상기 메시지의 전송을 시도한다. 만약,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상기 메시지의 전송이 성공한다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130)는 상기 메시지의 전송이 성공했음을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120)로 알려준다. 반대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상기 메시지의 전송이 실패한다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130)는 상기 메시지의 전송이 실패했음을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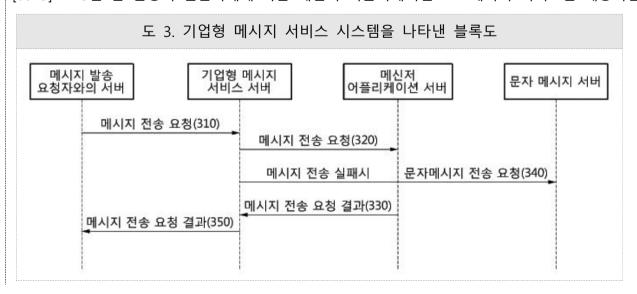
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120)로 알려준다.

[0037] 또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130)가 메시지를 전송하는 데에 실패한 경우,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120)는 문자 메시지 서버(150)로 상기 메시지의 전송을 요청한다. 이 때, 문자 메시지 서버(150)의 처리 결과는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120)로 회신된다.

[0038] 특히,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130)는 지정된 시간 동안만(예를 들어, 15초, 30초, 1분 등)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단말(140)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해당 메시지가 지정된 시간 동안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단말(140)로 전송되지 않는다면, 해당 메시지의 전송은 실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0039] 예를 들어, 사용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신용카드사에서 사용자의 신용카드 사용 알림 메시지를 전송한다고 가정한다. 이 때, 신용카드사의 서버(110)는 사용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응답하여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120)로 신용카드 사용 알림 메시지의 전송을 요청한다. 이 때,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120)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130)로 신용카드 사용 알림 메시지의 전송을 요청하고,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130)는 미리 설정된 시간 동안 신용카드 사용 알림 메시지의 전송을 시도한다. 만약, 설정된 시간 동안 신용카드 사용 알림 메시지의 전송이 성공한다면,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120)로 상기 전송의 성공을 인지한 후, 절차를 종료한다. 반대로, 설정된 시간 동안 신용카드 사용 알림 메시지의 전송이 실패한다면,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120)로 상기 전송이 실패한다면,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120)로 상기 전송의 실패를 인지한 후, 문자 메시지 서버(150)로 신용카드 사용 알림 메시지의 전송을 요청한다.

[0045]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으로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나타낸 동작 흐름도이다.

[0046] 도 3을 참조하면, 메시지 발송 요청자의 서버는 메시지의 전송을 요청한다(310). 이 때, 전송 요청은 특정 사용자의 핸드폰번호, 메시지 내용 및 메시지 키를 포함할 수 있다.

[0047] 또한,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는 상기 전송 요청에 응답하여, 메시지 수신자의 단말에 설치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제1 메시지가 전송될 수 있도록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로 상기 제1 메시지의 전송 요청을 전송한다(320).

[0048] 이 때,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는 상기 특정 사용자가 상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통하여 상기 제1 메시지의 수신을 원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즉, 기업형 메시지서비스 서버는 상기 특정 사용자가 상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통하여 상기 제1 메시지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단계(320)는 수행되지 않을 수 있다.

[0049] 또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제1 메시지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하고, 제1 메시지의 전송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로 전송한다(330). 즉,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미리 정해진 시간 동안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제1 메시지의 전송을 시도한다. 상기 미리 정해진 시간은 예를 들어, 15초, 30초, 1분 등 다양하게 설정될수 있다.

[0050] 만약,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미리 정해진 시간 동안 제1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전송하지 못한다면, 사용자에게 전송되어야 하는 메시지는 누락된 것일 수 있다. 이러한 누락은 메시지 발송 요청자 및 사용자들 모두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르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전송 결과는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로 피드백되고,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는 메시지의 전송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문 메시지의 형태로 해당 메시지를 재전송할 수 있다.

[0051] 만약,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제1 메시지를 미리 정해진 시간 동안 제대로 전송하지 못했다면,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 서버는 문자 메시지 서버로 문자 메시지의 전송을 요청할수 있다(340).

선행발명 3(을 제8호증)의 주요 내용 및 도면

가 **기술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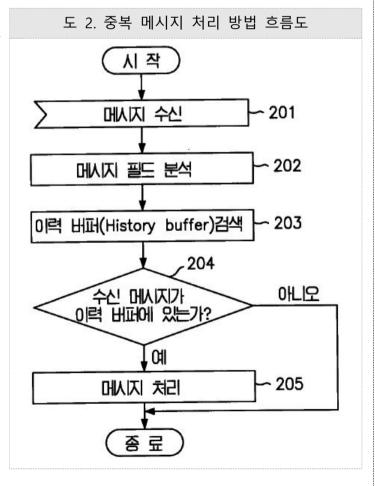
본 발명은 이동통신시스템에서 방송형 정보 서비스나 단문서비스(SMS : Short Message Service) 재전송시 발생되는 메시지 중복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메모리 사용 효율을 높이며, 고객의 편의를 증대시키고 단말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이동통신망에서의 메시지 중복 전송 방법 및 그를 이용한 단말기에서의 중복 메시지 처리 방법과, 상기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관한 것이다(3면 1단락).

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도 2 은 본 발명에 따른 단말기에서의 중복 메시지 처리 방법에 대한 일실시예 흐름도이다.

메시지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는 단말기내의 이력 버퍼(History Buffer)가 기존에 수신한 메시지들의 이 력(History)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며, 이 러한 이력을 바탕으로 메시지 중복 수 신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서, 이러한 이 력을 기억하는 수단으로 서비스범위와 메시지 식별번호 필드가 사용된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단말기에서의 중복 메시지 처리 방법은, 먼저 단말기에 메시지가 수신되 면(201), 단말기가 수신된 메시지의 필드를 분석하여(202) 이력 버퍼를 검색한다(203). 이때, 이력 버퍼(History Buffer)는 수신된 메시지의 이력(즉, 서비스범위와 메시지 식별번호)의 쌍을 기억하고있어, 이러한 이력을 가지고서 수신된



메시지의 서비스범위와 메시지 식별번호를 비교한다(204).

비교결과, 수신된 메시지의 서비스범위와 메시지 식별번호가 기 저장되어 있는 메시지의 서비스범위와 메시지 식별번호와 일치하면, 중복 수신 메시지로 간주하여 수신된 메시지를 무시한다(205)(8면 4~7단락).

이력 버퍼(History Buffer)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이력 버퍼는 서비스범위별로 n개의 이력을 기억한다(단, n값은 1부터 63사이의 값임).

메시지가 수신되면, 단말기는 수신된 메시지의 서비스범위 번호(SCN)와 메시지 식별번호 (MID)값의 쌍(Pair)을 이력 버퍼에 저장하는데, 만약 이력 버퍼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MID값이면(즉, 기억되지 않은 새로운 메시지이면),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비어있으면 저장을 한다. 그러나 만약 저장할 공간이 없으면, 가장 오래된 것을 지우고, 그 자리에 저장한다.

단말기는 이러한 과정을 메시지가 수신될 때마다 반복 수행한다.

이와 같이, 이력 버퍼(History Buffer)에서 이력을 변경하는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비스범위 값을 17, 18로 가정하고, n값을 3으로 가정할 때, 망에서 전송하는 메시지의 순서와 그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말기의 이력 버퍼의 변화가 (표 5)에 도시되었다(8면 8~13단락).

		丑 5	. 단말기	기의 이	력 버퍼	의 변호	ŀ			
서비스범위 번호 (SCN)	17	18	17	18	18	18	17	17	18	17
메시지 식별번호 (MID)	0	0	0	1	2	3	1	0	4	2

선행발명 4(을 제9호증)의 주요 내용 및 도면

과 **기술분야**

[0003]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무선 통신 장치에 지시되며, 보다 상세하게는 근거리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하는 무선 통신 장치의 사용자를 위한 사회적 프로파일을 결정하는 시스템과 방법에 관한 것이다.

[H] **상세한 발명의 설명**

[0119] (중략) 수신 시, 상기 UE(126) 수신된 메시지를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 데이터 저장영역 (184)에서 저장된 메시지와 비교한다. 도 6과 관련하여 위에서 논의된 타임 스탬프 데이터는 중복 메시지를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하 생략)

도 6B. 개별 메시지 및 메시지 헤더의 일 예를 도시하고, 메시지 헤더의 예시적인 실시예

T:1300226090950 P:1 U:192.168.1.193 #:2 L: lat:34.12786325 Ing: - 118.72215927500001 M: 13Lloyd: hi

T:1300226092168 P:1 U:192.168.1.9 #:2 L: lot:34.128018733333334 lng: -118.7220724 M: 10Robin: hi

T:1300226109161 P:1 U:192.168.1.20 #:3 L: lat:0 Ing: 0 M: 20Mobilitie: hi

T:1300226138101 P:2 U:192.168.1.162 #:3 L: lat:34.128018733333334 Ing: - 118.7220724 D: 00Rebin M: 12David: hi

선행발명 5(을 제10호증)의 주요 내용 및 도면

과 **기술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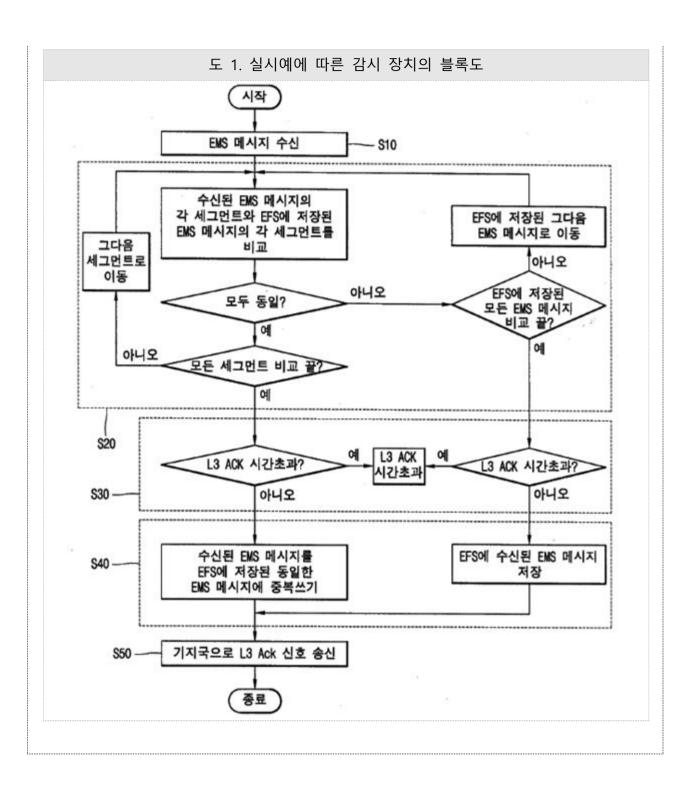
[0002] 본 발명은 이동 통신 단말기의 EMS 중복 메시지 확인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수신된 EMS(Enhanced Messaging Service) 메시지의 중복 확인 시간을 줄여 메시지 수신 처리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이동 통신 단말기의 EMS 중복 메시지 확인 방법에 관한 것이다.

터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26] 본 발명은 단말기에서 EMS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 중에서 EMS 메시지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 관한 것으로, 수신된 EMS 메시지를 구성하고 있는 메시지들의 각 세그먼트(segment)와 EFS에 저장된 EMS 메시지의 각 세그먼트 비교를 통해 수신된 EMS 메시지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 수행 시간 및 메시지 저장 시간을 줄이도록 하는 것을 그 요지로 한다.

[0027] 도1은 본 발명에 따른 단말기에서 EMS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을 도시한 것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EMS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S10)와, 상기 수신된 EMS 메시지를 구성하는 메시지들의 각 세그먼트와 EFS에 저장된 모든 EMS 메시지의 각 세그먼트를 차례로 비교하여 중복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S20)와, 상기 중복 여부 판단 시간이 기 설정된 L3 ACK 시간(예를 들어, 2초)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초과한 경우 L3 ACK 시간 초과 오류를 발생시키고 (S30), 그렇지 않은 경우 상기 EMS 메시지 중복 여부에 따라 EFS에 수신된 EMS 메시지를 저장하거나 EFS에 저장된 EMS 메시지 중 동일한 메시지에 중복쓰기(S40)한 후 기지국으로 L3 ACK 신호를 송신하는 단계(S50)로 이루어진다.

(도면 삽입에 따른 여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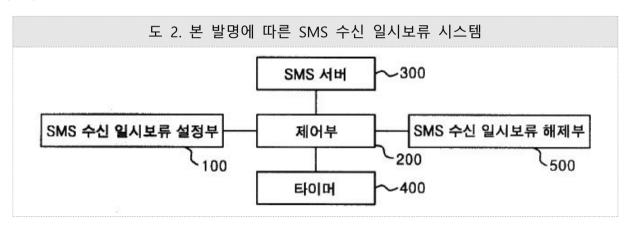
선행발명 6(을 제11호증)의 주요 내용 및 도면

까 기술분야

[0002] 본 발명은 SMS 수신 일시보류 서비스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보다 상세하게는 사용자의 지정 조건(옵션)에 따라 단문메시지(SMS : Short Message Service)의 수신 기능을 일정시간 동안 보류하고 이를 해제 할 수 있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띠 고안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37]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SMS 수신 일시보류 시스템의 상세 구성도로서 SMS 수신 일시보류 설정부(100)와, 제어부(200), SMS 서버(300), 타이머(400) 및 SMS 수신 일시보류 해제부 (500)로 구성되어 있다.



[0038] 상기 SMS 수신 일시보류 설정부(100)는 사용자의 희망에 따라 특정 위치, 장소, 시간에서의 SMS 수신 기능을 일시 보류하고자 할 때 기기에 구비된 특정 키(Key)를 눌러 설정하게된다. 이 때, 일반적인 음성 착신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0039] 상기 제어부(200)는 사용자의 희망 옵션에 의하여 SMS 수신의 일시 보류 기능이 설정될 때 특정 위치, 장소, 시간에 따라 일시 보류 기능을 유지하고, 해제할 수 있도록 각 구성 요소를 총괄적으로 제어 하는 역할을 한다.

[0040] 또한, 사용자에 의하여 기 설정된 SMS 수신 일시보류 기간(시간)이 길거나 한 지역(위치, 장소)에서의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는 사고로 장시간 머물 경우 SMS 서버(300)에 저장된 SMS 메시지를 그대로 보관하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0041] 상기 SMS 서버(300)는 제어부(200)의 제어에 따라 SMS 수신의 일시보류 기능이 설정될

때 외부로부터의 SMS 메시지 내용을 보관하고 SMS 착신 보류에 대한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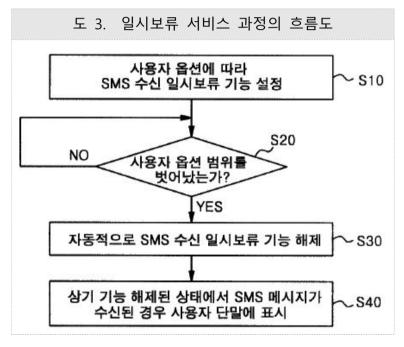
[0042] 상기 타이머(400)는 제어부(200)의 제어에 따라 사용자에 의하여 설정된 시간의 경과 여부를 체크하는 역할을 한다.

[0043] 상기 SMS 수신 일시보류 해제부(500)는 제어부(200)의 제어에 따라 SMS 수신 일시보류 설정부(100)에 의하여 기 설정된 SMS 수신의 일시보류 기능을 해제하게 된다.

[0044]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 SMS 수신 일시보류 서비스 과정을 나타낸 흐름도이다.

[0045] 먼저, 사용자가 SMS 수신 일시보류 설정부(100)의 특정 키 (Key)를 이용하여 SMS 수신 일시 보류 기능을 설정한다(S10). 이 때, 외부로부터의 음성 착신 기능은 통 상의 호(Call) 상태를 그대로 유지 한다.

[0046] 상기 SMS 수신 일시보류 설정 조건(옵션)은 사용자가 희망 하는 특정 위치, 장소, 시간에 따라 옵션을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다. [0047] 상기 SMS 수신 일시보류



기능이 설정된 상태에서 제어부(200)는 사용자의 이동 단말이 특정 위치, 특정 장소의 이탈 여부 및 기 설정된 시간의 초과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S20). 이 때, SMS 수신 메시지는 착신 순서에 따라 SMS 서버(300)에 그대로 보관된다.

[0048] 그 상태에서, 상기 제어부(20)에서 사용자의 이동 단말이 기 설정된 특정 위치, 특정 장소를 이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탈된 경계지역에서의 위치 및 장소에서 자동적으로 SMS수신 일시보류 기능이 해제되도록 하여 SMS 수신이 가능하게 한다.

[0049] 또한, 상기 제어부(20)에서는 타이머(400)에 의하여 기 설정된 시간(또는 기간)이 초과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SMS 수신 일시보류 기능이 해제되도록 하여 SMS 수신이 가능하게 한다(S30).

[0050] 바람직하게, 상기 제어부(200)는 사용자에 의하여 기 설정된 SMS 수신 일시보류 기간 (시간)이 길거나 한 지역(위치, 장소)에서의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는 사고로 장시간 머물 경우 SMS 서버(300)에 저장된 SMS 메시지를 그대로 보관하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0051] 그 후, 상기 SMS 수신 일시보류 기능이 해제된 상태에서 SMS 서버(300)에 SMS 메시지가 수신된 경우 사용자 액정 단말에 SMS 수신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 SMS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게 된다(S40).

선행발명 7(을 제12호증)의 주요 내용 및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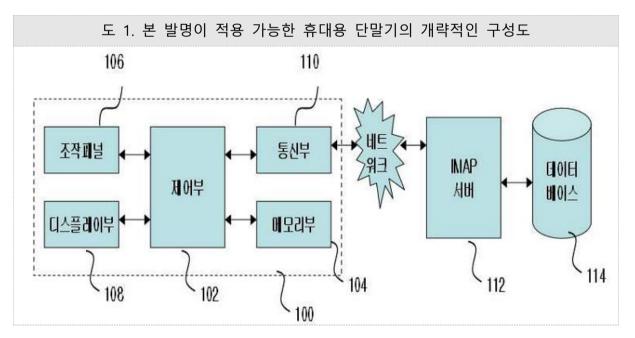
개 **기술분야**

<7> 본 발명은 휴대용 단말기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메시지를 부분 수신하는 방법 및 그에 따른 휴대용 단말기에 관한 것이다.

터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18> 상기 휴대용 단말기(100)의 제어부(102)는 휴대용 단말기(100)를 전반적으로 제어함은 물론이며,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메시지 부분 수신을 이행하는 메일 클라이언트 등의 메시지 수신 모듈을 구비한다.

<19> 특히, 제어부(102)는 해당 사용자에게 수신된 메시지의 헤더만을 수신하고, 상기 메시지 헤더로 구성된 목록을 사용자에게 안내하고, 상기 안내된 메시지 중 어느 하나가 선택되면, 미리 선택된 메시지 부분수신 설정정보 또는 메시지별 부분수신 설정정보에 따라 상기 선택된 메시지에 대한 부분 송신을 메시지 서버에 요청하여 해당 부분의 메시지 수신을 이행한다.



<20> 상기한 메시지 서버로는, 메시지 수신을 위해 인터넷 망에서는 POP3(Post Office Protocol 3), IMAP(Internet Messaging Access Protocol), PIMAP(Push IMAP) 등 여러 형태의 프로토콜이 사용될 수 있으며, 이하 상기 메시지 서버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IMAP 서버

(112)를 채용한 예를 들어 설명한다.

<21> 또한, 상기 메시지에 첨부된 파일 역시, 미리 선택된 메시지 부분수신 설정정보 또는 메시지별 부분수신 설정정보에 따라 상기 선택된 파일에 대한 부분 송신을 IMAP 서버(112)에 요청하여 해당 부분의 첨부 파일 수신을 이행한다.

<22> 메모리부(104)는 제어부(102)의 처리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다양한 정보를 저장하며, 특히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라 수신된 메시지에 대응되는 메시지 정보를 저장한다.

선행발명 8(을 제13호증)의 주요 내용 및 도면

과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휴대용 이동통신 단말기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휴대용 이동 통신 단말기의 관리 방법 및 상기 관리 방법이 수행되는 휴대용 이동통신 단말기에 관한 것이다.

터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07] 상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이동통신 단말기는,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서 블라인드 모드를 실행시키고, 블라인드 모드가 실행중인 동안에 전화통화 또는 문자 메시지가 수신되면 전화통화 또는 문자 메시지가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것을 제한한 상태에서 수신된 전화통화 또는 문자 메시지의 수신 목록을 생성하고, 사용자의 요청에 의하여서 상기 수신 목록을 사용자에게 표시할 수 있다.

[0048] 도 2를 더 참조하여 설명하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휴대용 이동통신 단말기 관리 방법은 블라인드 모드 설정 과정(S100), 블라인드 모드 실행 중에 수신되는 전화 및 문자 메시지에 대한 자동 응답 과정(S200), 블라인드 모드 실행 중에 수신된 전화 및 문자에 대해서 중간에 다시 한 번 응답 메시지를 전송하는 과정(S300), 블라인드 모드 실행 중에 사용자가 수신된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응답하거나 간단한 메모 및 일정관리를 수행하는 과정(S400), 및 블라인드 모드를 해제하는 과정(S500)을 포함한다.

[0051] 프로그램이 설치된 후, 사용자가 학교수업, 회의, 세미나 등과 같이 수신되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에 응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거나 수신되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에 의하여서 방해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의 휴대용 이동통신 단말에 설치된 블라인드 모드를 실행시킨다(S105).

[0052] 블라인드 모드는 상술한 바와 같이 휴대용 이동통신 단말기의 진동모드, 램프 모드와 더불어 휴대용 이동통신 단말기로 수신된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어떻게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관한 방식을 정의하는 것이다. 즉 사용자가 휴대용 이동통신 단말기의 바탕화면에 표시된 아이콘을 선택하거나 아이콘에 대응되는 특수 버튼을 누르면 블라인드 모드가 실행되고, 휴대용 이동통신 단말기의 터치스크린 화면에 B, BS, BM의 세 개의

블라인드 메뉴가 바탕화면 위에 표시되며 해당 메뉴 이외의 화면 영역은 잠금 설정되어 사용 자가 선택할 수 없게 된다(도 3).

[0060] 제 S410 단계에서 사용자가 블라인드 모드를 실행시킨 후 수신된 전화 및 문자 메시지 목록을 확인하는 메뉴(B)를 선택한 경우에는 휴대용 이동통신 단말기는 도 4a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수신된 전화 및 문자 메시지 목록을 발신인 정보 및 수신 시간과 함께 사용자에게 표시한다(S430). 사용자가 표시된 목록에서 특정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선택하지 않고 취소하는 경우에는 상술한 제 S105 단계 직후로 진행하며(S440), 사용자가 특정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번호로 통화를 할 것인지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것인지를 도 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문의하고, 취소 시에는 상술한 제 S430 단계로 진행하여 목록을 다시 표시한다(S450).

